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 2022 - 216호 2022. 8. 24.

사 건 번호 2018카조0856

사 건 명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1. 주식회사 참프레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길 ㅇㅇ-ㅇㅇ 대표이사 고〇〇 대리인 변호사 최〇〇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00 00군 00읍 00로 000 대표이사 강〇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 김○○

3. 주식회사 정다운 ㅇㅇ시 ㅇㅇㅇㅇㅇ길 ㅇㅇㅇ-ㅇㅇ(ㅇㅇ동) 대표이사 김〇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〇〇, 김〇〇, 이〇〇, 김〇〇, 윤〇〇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시 ○○면 ○○○길 ○○○ 대표이사 이〇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〇〇, 이〇〇, 박〇〇, 곽〇〇

- 6.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시 ○○면 ○○○○길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 김○○, 이○○
- 8.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OO OO군 OO면 OO료 OOO

 대표이사 나OO

심 의 종 결 일 2022. 5. 18.

주 문

- 1. 피심인 주식회사 참프레,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피심인 주식회사 정다운,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피심인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피심인 주식회사 모란식품, 피심인 성실농산영농조합법인 및 피심인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는 오리 입식량, 종오리 및 종란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오리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피심인 주식회사 참프레,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피심인 주식회사 정다운,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피심인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피심인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유성농산 주식회사는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할인폭, 토치비 및 발골비 등 오리 신선육 제품의 판매가격 결정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참프레 : 550,000,000원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 1,910,000,000원

3) 주식회사 정다운 : 1,037,000,000원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 570,000,000원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 678,000,000원

6)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 382,000,000원

7) 주식회사 모란식품 : 59,000,000원

8)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 509,000,000원

9)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 16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기 피심인 주식회사 참프레¹⁾ 등 9개사는 오리 신선육을 생산·판매하고 있거나 생산·판매하였던 사업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²⁾ 제2조 제1 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11) 11 11/
구분	피심인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
		2020	121,724	439,064	△3,901	△3,150	
1	참프레	2019	121,724	455,392	△6,757	△7,734	2010. 11. 24.
		2018	121,724	450,766	18,805	13,601	
		2020	500	233,800	1,738	3,028	
2	다솔	2019	500	220,298	△1,248	△3,707	2009. 8. 14.
		2018	500	176,103	14,057	9,333	

¹⁾ 이하, 각 피심인을 기재할 때에는 '피심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생략하고, 피심인 9개사 전체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 또한 '사조원'은 '사조'로, '주원산오리'는 '주원'으로, '삼호유황오리'는 '삼호'로, '모란식품'은 '모란'으로, '유성농산'은 '유성'으로, '성실농산'은 '성실'로 각각 약칭한다.

^{2)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들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구분	피심인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
		2020	3,253	123,887	△1,871	△2,272	
3	정다운3)	2019	2,053	114,132	5,300	3,755	2000. 4. 27.
		2018	2,053	94,884	13,508	9,038	
		2020	56,593	332,957	△18,910	△15,100	
4	사조 ⁴⁾	2019	56,593	243,157	△6,079	△2,808	2011. 8. 8.
		2018	56,593	216,831	8,130	1,757	
		2020	16,687	75,401	△7,327	△8,185	
5	주원5)	2019	12,085	71,578	△4,985	△5,618	2002. 3. 28.
		2018	12,085	83,824	5,559	4,855	
		2020	1,200	16,918	84	217	
6	삼호	2019	1,200	17,881	202	53	2005. 8. 9.
		2018	1,200	21,325	562	316	
		2020	1,003	38,263	△841	△1,487	
7	모란	2019	1,003	28,258	705	116	2006. 6. 27.
		2018	5,016	31,936	2,636	1,849	
		2020	250	765	△697	△693	
8	유성	2019	250	3,213	△1,104	△252	2005. 5. 31.
		2018	250	15,582	△720	△3,024	
		2020	300	0	△396	△168	
9	성실	2019	300	0	△413	△49	2007. 12. 28.
		2018	300	7,518	1,068	21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³⁾ 정다운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던 '舊주식회사 정다운(이하 '舊정다운'이라 한다)'이 2016. 6. 21.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는 같은 날 회사명을 현재의 '주식회사 정다운'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舊정다운의 법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피심인인 정다운의 행위로 본다. 한편, 정다운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함께 가담하였던 '신선산오리 영농조합법인(이하 '신선'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자연일가(이하 '자연일가'라 한다)'를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이후인 2018. 5. 18.과 2019. 2. 22.에 각각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신선과 자연일가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도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2항에 따라 정다운의 행위로 본다. 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행위 당시의 회사명인 신선과 자연일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⁴⁾ 사조의 경우, 2016년 1월경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던 '주식회사 사조화인코리아'가 2017. 10. 1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팜스'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팜스는 회사명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화인코리아'로 변경하였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화인코리아는 2019. 10. 11. 회사명을 다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던 주식회사 사조화인코리아의 법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2항에따라 현재 피심인인 '사조'의 행위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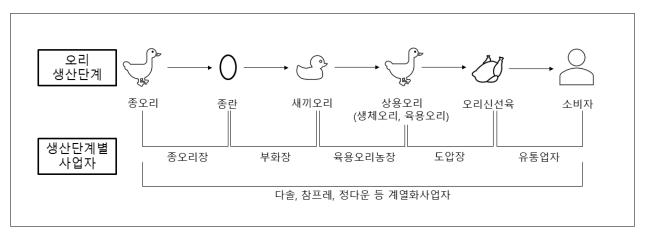
⁵⁾ 주원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회사명은 '주식회사 주원산오리'였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16. 12. 14. 회사명을 현재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로 변경하였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 1) 오리 산업 개관
- 가) 오리의 생산단계별 개념
- 2 우수한 합성종 '상용오리'(CD, Commercial Duck) 생산을 위하여 교배단계에 따라 세대별로 오리를 분류하면, 원종오리·종오리·상용오리로 나뉜다. '원종오리'(GPS, Grand Parent Stock)란 종오리(PS, Parent Stock)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계통의 오리를 말하며, '종오리'란 '상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오리로 상용오리의 부모 오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종오리는 상용오리의 조부모 오리가 된다.
- 종오리가 낳은 알을 '종란'이라 부르며, 종란을 부화하면 '새끼오리'가 된다. 새끼오리가 성장하여 도압 및 유통 가능할 정도의 상용오리가 되면, 이를 '생체오리' 또는 '육용오리'라고도 한다.
- 4 이러한 상용오리를 도압 등 1차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오리 신선육'이라고 하며, 구체적 생산단계별 개념은 아래 <표 2>와 같다.

< 丑 2>

오리 신선육 생산단계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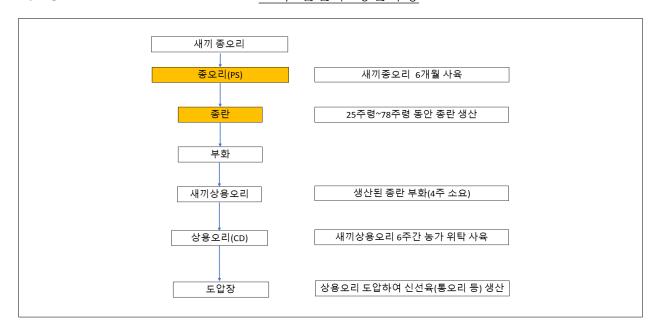


나)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5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 등으로부터 '새끼종오리'를 구매한 후, 직영 또는 계약 농장(종오리장)에 공급하여 약 6개월 동안 사육한다. 종오리는 보통 25주령이 되면 산란을 시작하며 78주 령까지6) 종란을 생산7)하다가 도태된다.

<표 3>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 이후,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을 부화장에서 4주가량 부화시키면 새끼오리가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새끼오리를 부화장에서 다시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을 시작하는데, 이를 '입식'이라고 한다. 새끼오리를 키워 상용오리로 성장시키는 과정은 통상 6주가량이 소요된다.
- 7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다 자란 상용오리를 도압장에서 '도압'하여 통오리 등 신선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육으로 하여 육가공품인 훈제제품을 생산한다. 오리 공급물량이 과도하면 추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냉동하여 창고에 보관해두었다가 냉동 통오리, 냉동 완포 등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⁶⁾ 가축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 규정상 종오리의 유효기간은 78주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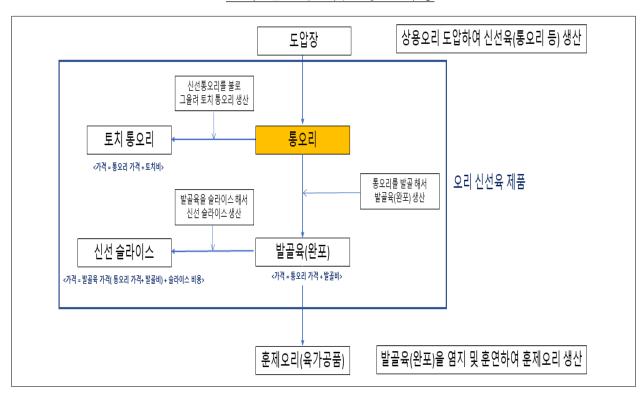
⁷⁾ 통상 종오리 1마리가 종란 274개를 생산하고, 이중 새끼오리로 부화되는 것은 230개 정도이다.

2) 오리 신선육 제품 종류 및 가격결정 구조

오리 신선육 제품에는 아래 <표 4>와 같이 통오리, 발골육, 신선 슬라이스가 있다. '통오리'는 신선 통오리와 토치 통오리로 구분되는데, '신선 통오리'는 상용오리를 도압만 한 것이고, '토치 통오리'는 도압한 통오리를 잔털 제거를 위해 불로 살짝 그을린 것을 말한다. 통오리를 발골(抜骨)한 것을 '발골육(완포)'이라 하고, 이를 슬라이스 기계로 썰어서 생산한 제품이 '신선 슬라이스'이다.

<班 4>

오리 신선육 제품 생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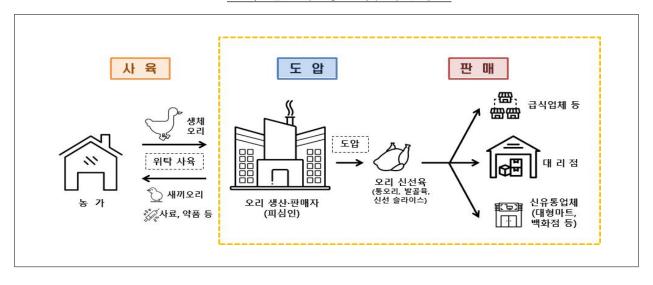
9 오리 신선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발골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에 발골비를 합하여 결정되고, 신선 슬라이스 가격은 발골육 가격에 슬라이스 비 용을 합하여 결정된다.⁸⁾ 따라서 통오리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오리 신선육 제품의 가 격이 상승하게 된다.

⁸⁾ 각 사업자별로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발골비는 800원, 슬라이스 비용은 1,000원, 토치비는 200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발골육 가격=통오리 가격+800원, 신선 슬라이스 가격=발골육 가격+1,000원, 토치 통오리 가격=통오리 가격+200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된다.

- 3) 오리 신선육 제품의 유통경로
- 기 피심인들은 대리점에게 주로 통오리나 발골육을 판매하고, 신유통업체와 급식 업체에게는 주로 훈제 제품이나 신선 슬라이스를 판매한다.

<표 5>

오리 신선육 생산 및 유통경로



4) 통오리의 대리점 판매가격 결정 구조

가) 통오리 규격

⁹⁾ 대다수의 대리점은 다수의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과 복수로 거래를 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주로 오리 신선육 중간 유통업(식당, 재래시장, 소규모 슈퍼마켓 등에 판매)을 영위하고 있으며,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한 오리 신선육을 2차 가공하여 유통하거나, 학교 등 급식업체에 공급하기도 한다.

¹⁰⁾ 대형마트, SSM(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등 신유통업체들은 대량으로 오리 신선육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5대 계열화사업자(2016년 도압수 기준: 다솔, 정다운, 사조, 참프레, 주원) 위주로 거래하고 있다.

¹¹⁾ 피심인들의 오리 신선육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소규모 기타 거래 금액은 제외하였다.

12 통오리 제품은 중량에 따라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중량에 비례하여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 통오리는 16호부터 28호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분되며, 아래 <표 6>과 같이 20호(2kg)를 기준으로 호수당(100g) 일정 가격(100원~200원)이가감된다.

<표 6>

중량에 따른 통오리 호수 구분

호수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
중량(도압 후)	2.0kg	2.1kg	2.2kg	2.3kg	2.4kg	2.5kg	•••

나) 통오리의 대리점 판매가격 책정

13 통오리 판매가격은 20호 가격을 기준으로 호수당 100원~200원을 가감한 후다시 할인금액을 빼고 산정된다.12) 다만, 할인금액은 피심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리점이 물량을 얼마나 공급받는지 등에 따라 대리점 등급을 나누고 대리점 등급별로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한다.

4 즉, 다솔, 정다운, 사조, 참프레 및 주원과 같은 5대 계열화사업자는 대리점 등급을 구분하여 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점유율이 작은 사업자들은 대리점 등급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리점들이 주문하는 물량에 따라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5) 국내 오리 시장 현황

2016년 국내 전체 오리 도압수를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도압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이 5대 계열화사업자(다솔, 정다운, 사조, 참프레, 주원)가전체 점유율의 약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92.4%에이른다.

¹²⁾ 판매가격=20호 통오리 가격±호수당 가격(100원~200원)-할인금액

<표 7> <u>국내 오리 도압수 기준 점유율 현황(2016년 기준)</u>

업체명	도압수(首)	점유율(%)		
다솔	18,674,745	26.1		
정다운	8,164,782	11.4		
사조	8,042,144	11.2		
참프레	6,790,286	9.5		
주원	6,539,667	9.2		
모란	5,136,265	7.2		
성실	5,123,499	7.2		
삼호	3,897,562	5.5		
유성	3,622,355	5.1		
소계(피심인들의 합계 ¹³⁾)	70,713,565	92.4		
신선	3,325,529	4.7		
자연일가	952,856	1.3		
(비공개)	443,875	0.6		
(비공개)	529,427	0.7		
(비공개)	144,228	0.2		
(비공개)	57,844	0.1		
합계	71,445,064	100.0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6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8>과 같이 생산원가¹⁴⁾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고, 이후 2015년 말경 국내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부터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9>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다.

¹³⁾ 신선과 자연일가의 점유율까지 합산할 경우, 점유율은 98.4%에 이른다.

¹⁴⁾ 통오리 생산원가는 1수(首)당 통상 6,000원~6,50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8>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1~2013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8,103	7,700	7,700	7,700	8,039	8,200	8,016	8,168	7,881	7,800	7,410	6,875
2012	6,961	7,438	7,752	6,593	5,900	6,080	7,774	8,819	8,343	7,465	6,900	7,290
2011	8,258	9,359	10,280	11,233	11,248	9,073	8,409	8,267	7,800	7,422	7,200	7,200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

<班 9>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8,642	8,614	8,990	9,283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471
2016	6,597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33	7,781
2015	8,581	8,000	8,597	8,817	8,500	8,500	8,500	8,500	8,017	7,774	8,000	7,339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

이에, 피심인들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아래 <표 10>과 같이, ① 2012년 4월에 새끼오리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2016년 1월, 4월 및 11월에 각각 '종오리·종란'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통오리 20호의 가격 인상, 할인금액의 폭 및 제비용(토치비, 발골비 등)의 하한선 등을 합의하였다.

<哥 10>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행위	피심인	위반기간	합의 내용	적용 법조			
1	6개사15)	2012. 4. 12.	입식량 감축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	9개사	2016. 1. 13.~2016. 11. 10.	종오리·종란 감축	"			
3	8개사16)	2016. 1. 13.~2017. 8. 10.	통오리 기준가격 인상 등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 내용에 따라 크게 '생산량 감축 합의'와 '가격 인상 합의'로 나누어진다. 생산량 감축 합의는 계열화사업자¹⁷⁾들의 대표들이

¹⁵⁾ 피심인들 중 3개사(참프레, 다솔, 사조)는 2012. 4. 12. 입식량 감축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¹⁶⁾ 모란은 2016. 1. 13.부터 2017. 8. 10.까지 있었던 '가격 인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17) &#}x27;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자'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의 계열화사업자 비율은 96.6%인 것으로 파악된다.

모이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¹⁸⁾의 '계열화협의회¹⁹⁾'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가격 인상 합의는 계열화사업자의 영업본부장들의 모임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각 행위의 구체적 합의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2) 2012년 '입식량' 감축 합의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위 <표 8>과 같이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자, 피심인들 중 6개사,²⁰⁾ 신선 및 자연일가²¹⁾ 등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11>과 같이 2012. 4. 1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오리사냥'에서 개최된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하였다.

(비공개)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22)

¹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는 1992. 7. 22. 오리고기 홍보 및 회원사의 소득향상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피심인들이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하 '오리협회'라 한다.

¹⁹⁾ 오리협회 자료에 따르면, '계열유통분과위원회', '계열업체대표자회의'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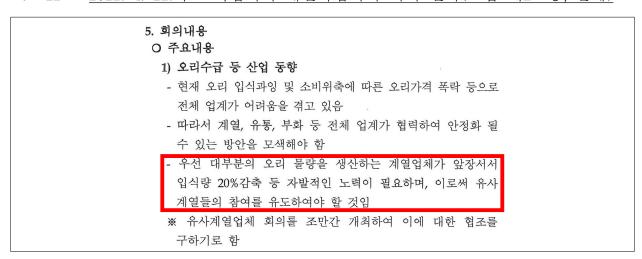
²⁰⁾ 정다운, 주원, 삼호, 모란, 유성, 성실을 말한다.

²¹⁾ 신선과 자연일가는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정다운에 흡수합병되었다(위 각주 3)번 내용 참조).

²²⁾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약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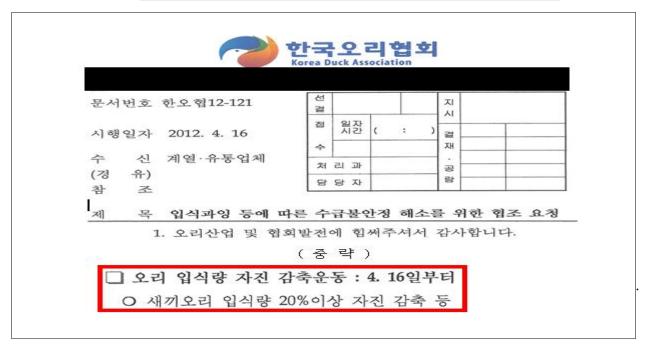
20 이 회의에서 위 8개사의 대표 등은 아래 <표 12>와 같이 오리가격을 상승시 키기 위해 "대부분의 오리 물량을 생산하는 계열업체가 앞장서서 입식량 20% 감축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 2012. 4. 12.자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 회의 결과(소갑 제2호증, 발췌)



21 이후, 오리협회는 2012. 4. 16. 아래 <표 13>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새끼 오리 입식량 20% 이상 자진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13> <u>2012. 4. 16.자 오리협회의 발송 공문(소갑 제3호증, 발췌)</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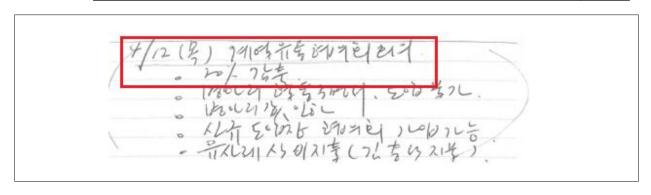


22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14~23>과 같이 정다운의 내부 문서, 유성 이〇 〇 대표이사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 정다운의 내부 문서(회의결과 보고서, 2012. 4. 16.)(소갑 제4호증, 발췌)

제 목:	JDF 주간업무회의	일시/ 장소 : '12. 04/16 10:30~12:00 (회의실)
작성 자 :		
. 중점토의/	상황	
		(중략)
5 계열업체	회의결과	(중략)

<표 15> 유성 이○○ 대표이사의 업무수첩 내용(2012. 4. 12.)(소갑 제5호증, 발췌)



<표 16> 유성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 문) 2012. 4. 12. 계열화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 간에 합의된 오리 수급 관련 사항이 있었나요?
- 답) 육용오리 <u>입식량을 20%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u> 당시 가격이 하락하던 상황 이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 (이하 생략)

<표 17> 삼호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발췌)

- 문) 2012. 4. 12. 계열화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 간에 합의된 오리 수급 관련 사항이 있었나요?
- 답) 당시 오리가 과잉 생산되어 …… 이렇게 누적된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리를 감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u>각 사 오리 입식량</u> 중 20%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표 18> 주원 이틸틸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발췌)

- 문) 2012. 4. 12. 계열화협의회에서 참석자들 간에 합의된 오리 수급 관련 사항이 있었나요?
- 답) … 계열화사업자들이 각 사별로 오리 입식량을 20% 감축하고 … (이하 생략)

< 표 19> <u>성실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u>

- 문) 2012. 4. 12. 계열화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 간에 합의된 오리 수급 관련 사항이 있었나요?
- 답) 당시 오리가 과잉 생산되어 <u>오리고기 가격이 폭락하였기 때문에, 이를 조금 올려</u> 보고자 육용오리 입식량을 20%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표 20> 모란 김□□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발췌)

- 문) 자료에 따르면 2012. 4. 12. 계열화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 간에 육용오리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답)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u>자료를 보니 입식량 20%를 자진 감축하자고 논의된 것</u> 으로 보입니다. (이하 생략)

<표 21> <u>신선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u>

- 문) 2012. 4. 12. 계열화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 간에 합의된 오리 수급 관련 사항이 있었나요?
- 답) 육용오리 입식량을 20%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표 22> 정다운 이◎ 前회장의 확인서(소갑 제63호증, 발췌)

이 모임에 참석한 계열화사업자들은 당시 오리 입식 과잉과 소비 위축 등으로 오리 가격이 낮아져 전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모든 계열업체가 오리 입식량을 20% 감축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표 23> 오리협회 허○○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발췌)

- 문) 2012.4.12.일에 오리사냥 식당에서 개최된 계열유통협의회에 진술인은 참여하였는가? ······ 회의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오리 물량을 생산하는 계열업체가 앞장서서 입식량 20% 감축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로써 유사 계열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것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답) <u>진술인은 위 회의에 참여</u>하였고, …… 오리고기 가격 폭락 등으로 전체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u>11개 계열화 사업자 대표들이 새끼오리 입식</u> <u>량을 20% 수준으로 자발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결정</u>을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나) 실행 여부

- 23 위 합의 이후, 위 8개사가 실제로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을 감축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유성은 위 2012. 4. 12.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²³⁾
 - 3) 2016년 '종오리·종란' 감축 합의
 - 가) 배경 및 개요
- 24 2015년 말부터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에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24>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자, 피심인들은 2016년 1월, 4월 및 11월에 각각 '종오리·종란' 감축을 합의하였으며, 구체적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²³⁾ 유성의 이〇〇 대표이사는 "당시 거래하고 있던 부화장에 병아리 공급물량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화장에서도 오리 시장 상황을 알기 때문에 계약된 공급물량을 좀 줄여 주고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44호증, 이〇〇 진술조서 9쪽 참조).

<班 24>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8,642	8,614	8,990	9,283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471
2016	6,597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33	7,781
2015	8,581	8,000	8,597	8,817	8,500	8,500	8,500	8,500	8,017	7,774	8,000	7,339

*자료출처: 오리협회 제출자료

나) 2016년 1월 '종오리' 감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25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8개사²⁴⁾의 대표(임원)들은 2016. 1. 13.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개최된 오리협회의 '2016년 제1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종오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5> 2016년 제1회 계열·유통분과협의회 회의자료²⁵⁾(소갑 제13호증, 발췌)

2016년 제1회 계열 · 유통분과위원회 회의

일시: 2016. 1. 13(수)12:00

장소: 대전 관저동

26 위 8개사의 대표(임원)들은 이어서 2016. 1. 28.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²⁶⁾'에 참석하여, 다음 <표 26>

²⁴⁾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 참프레와 모란은 이후 합의 내용을 오리협회로부터 전달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본문 <표 35> 및 <표 38~39> 참조).

^{25) 2016. 1. 13.} 계열·유통분과협의회 회의자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종오리 감축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6. 1. 13. 계열·유통분과협의회 회의에서 합의된 종오리 감축 관련 내용은 2016. 1. 28.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 회의자료(소갑 제14호증, 본문 <표 26> 참조)에서 확인된다.

과 같이 "업체별 산란 중인 종오리(25~70주령)의 18%"를 감축 대상으로 하되, "단 71주령 이상 종오리의 경우 의무도태"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26> 2016. 1. 28.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소갑 제14호증, 발췌)

2016	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	위원회 회의 결교
1. 회의일시	: 2016. 1. 28일(목) 14:00	
2. 장소 : 대	전 아드리아 호텔 -	
3. 참석자 : 9	9명 (위원 11명 중 9명 참석)	
0 위원장:		
0위원:		
* 불참위		
	(중략)	
o 오리수급3	조절을 위한 협의	
가. 오리수급	조절 추진(안)	
- 감축대싱	· : 업체별 산란중인 종오리(25-70측	주령)의 18%
	(단, 71주령 이상 종오리의 경우	- 의무도태)
	* 종오리 주령은 15년 12월말	종오리사육현황 기준 점

27 한편, 오리협회는 2016. 2. 2. 다음 <표 27>과 같이 업무연락을 통해 구성사업 자들에게 위 합의 결과에 따른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을 통지하고, 각 사로 하여금 이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16. 2. 4.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8 이 업무연락 문서의 내용을 보면, "오리고기 수급안정에 대하여 3차례의 협의" 가 있었고, 그 시행은 "「오리 수급조절협의회27)」를 거쳐 최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오리협회로 하여금 2016. 2. 12.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사전에 합의해 두었던 종오리 감축 방안을 오리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인 오리협회로 하여금 회의 안

^{26) &#}x27;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는 오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회의체로서 오리협회의 회원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의 연도별 원종오리 수입량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리협회의 협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화 분과를 대표하는 5명 및 계열유통분과를 대표하는 5명이 3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한다.

^{27) &#}x27;오리 수급조절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가 2013. 8. 30.에 오리 수급조절 관련 의견수렴·소통을 위해 구성한 회의체로, 오리협회가 사무국을 담당하며 생산자(오리협회, 농협, 모란, 주원, 삼호 등)·정부(농식품부 관계자)·학계·소비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되도록 하였다.

<표 27> 2016. 2. 2.자 오리협회의 업무연락 문서(소갑 제15호증, 발췌)

업무연락

2016. 2. 2

수신: 계열업체 및 부화장

발신 : 한국오리협회 (Tel. 02-585-5286 Fax. 02-59/-5245)

제목 : 오리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참여 요청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u>오리고기 수급안정에 대하여 3차례의 협의가 있었으나 「오리</u> 수급조절협의회」를 거쳐 최종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사항에 대한 업체별 참여 확약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대표자께서 서명한 후 2016. 2. 4(목) 12:00까지 우리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이와 같이,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종오리 감축 방안은 2016. 2. 12.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으며, 오리협회는 2016. 2. 16. 아래 <표 28>과 같이 위 종오리 감축 방안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 그 내용대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 조오리 감축 시행 통지 공문(소갑 제16호증, 발췌)

신이내린 선물! 대한민국 오리고기!



사단 **한국오리협회** 법인 Korea Duck Association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오리 수급조절을 위한 종오리 감축(도태) 시행

1. 오리 산업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제1회 오리수급조절협의회 (2. 12개최) 결과에 따른 종오리 감축 (도태)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오리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업체 : 전국 종오리 보유 계열업체 및 종오리 농장 (비회원, 오비아PS(ST5) 보유 종오리 농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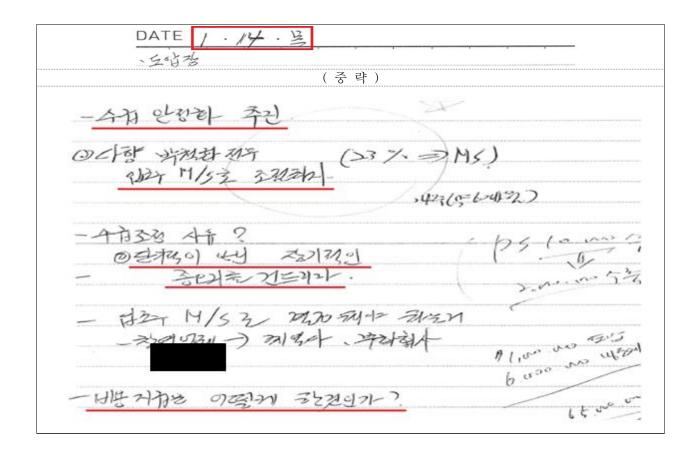
나. 감축(도태)기준 : '15.12.31일 **기준 각 업체의 산란 종오리 (25~70주령)** 의 18%해당 수량 감축

* 71주령 이상 종오리는 자체적으로 의무도태

30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29~40>과 같이 주원 안○○ 본부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및 각 피심인의 대표(임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9> <u>2016. 1. 14.자 주원 안○○ 본부장의 업무수첩 자료²⁸⁾(소갑 제17호증, 발췌)</u>

²⁸⁾ 주원의 이틸틸 대표가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온 후, 이를 '주간회의'를 통해 전달한 내용을 주원의 안우영 본부장이 자신의 업무수첩에 적어 놓은 자료이다(소갑 제53호증, 안우진 진술조서 참조).



<표 30> <u>다솔 박○○ 부사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u>

- 문) 주원산오리 안 \bigcirc 0 본부장 <u>16.1.14일 업무수첩</u>에 보면, "<u>다향 박 \bigcirc 0 전문 입추</u> M/S로 조절하자"라고 적혀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 답) 16.1.13일에 …… 계열화협의회에서는 종오리 수급조절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 통오리가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던 시점이라 오리고기 가격 상승을 위해서 종오리 도태를 통해서 시장에 나오는 오리고기의 양을 줄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육용오리를 한달에 650 만수 정도 도압 하였었는데 500-550만개 정도가 시중에 풀리는 것이 적정 육용오리 공급량이므로 18-20%를 줄이기 위해서 육용오리의 엄마 닭에 해당하는 종오리를 도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종오리를 도태하여 물량이 줄이는 것이 육용오리 공급양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표 31> <u>정다운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발췌)</u>

- 문) 진술인이 기억하기로, 2016. 1. 13. 정다운을 대표하여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 의에 참석한 자가 있었나요?
- 답) 아마도 <u>이◎◎ 상무님이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u> 저는 '오리○○○'라는 식당에 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표 32> 사조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발췌)

- 문)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 있었나요?
- 답) 문건을 보니 <u>종오리를 감축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u> 2016년도에 오리 생산이 과 잉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표 33> 주원 이틸틸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발췌)

- 문)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오리 수급 관련 사항은 무엇이 있었나요?
- 답) <u>종오리를 감축하기로 결정</u>하였고,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표 34> 삼호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발췌)

- 문)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 있었나요?
- 답) 당시 과잉생산된 오리 생산량을 줄여 너무 낮아진 오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u>종오리를 감축하기로 합의</u>하였습니다.

<표 35> 모란 김□□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발췌)

- 문) 열람하신 문건 내용에 따르면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계열화사업자들은 종오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란식품은 이러한 회의 결과를 전달받았나요?
- 답) 네, 협회에서 전달받았던 것 같습니다.

<표 36> 유성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 문)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 있었나요?
- 답) 종오리를 줄이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표 37> 성실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

- 문)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 있었나요?
- 답) 문건 내용을 보니,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서 …… <u>종오리를</u> 감축해서 가격을 회복해 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 38> 오리협회 이⊠⊠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발췌)

- 문) '2016년 제1회 종오리수급운영위원회'(2016. 1. 28.)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에 종 오리 감축 선행조건으로 '참프레 등 오비아 사육농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종오리 감축을 결정한 계열사들은 참프레에도 동참을 요청한 것 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답) 네, 참프레는 여타 계열화사업자들과 다른 품종의 종오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열화사업자들이 <u>참프레에 대해서도 종오리 감축 동참을 요청</u>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결국 참프레도 이에 동의하여 종오리를 감축하였습니다.
- 문) 당시 참프레에 종오리 감축 동참을 요청한 것은 누구인가요? 오리협회인가요, 혹은 계열화사업자들 중 하나인가요?
- 답) 오리협회 측에서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송부하면서 동참을 요청하 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 39> 오리협회 허○○ 차장의 2차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발췌)

- 문) '2016년 제1회 종오리수급운영위원회'(2016. 1. 28.)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에 종 오리 감축 선행조건으로 '참프레 등 오비아 사육농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u>종오리 감축을 합의한 계열사들은 참프레에도 동참을 요청</u>한 것 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답) 네, 저희가 제출한 종오리 감축 결과 내역을 보시면 <u>참프레도 종오리 감축에</u> 동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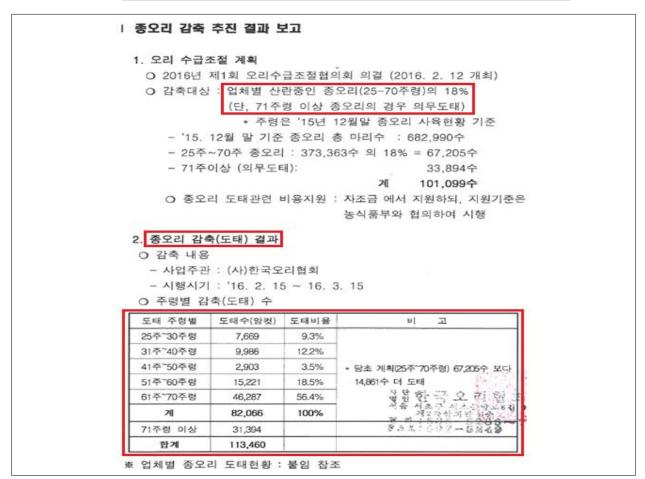
<표 40> 신선 이□□ 대표이사²⁹⁾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

- 문)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 있었나요?
- 답) <u>문건을 보니 종오리 감축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u> 실제로 계열화사업자 모임 때 수급조절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2) 실행

31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2016. 3. 25. 농식품부에 보고한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41>과 같이 아직 주령이 짧아 상대적으로 상용오리 생산 잠재력이 높은 25~70주령 종오리에 대해서는 당초 감축 계획(67,205수)보다 많은 82,066수가 감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문서(소갑 제18호증, 발췌)



솔 17,349수, 사조 19,716수, 참프레 15,935수, 주원 6,325수, 모란 4,832수, 삼호 2,304수, 성실 3,530수, 정다운 1,550수, 유성 1,295수, 신선 1,770수 등으로 확인된다.

<	<u>오리</u>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문서(소갑	제18호증,	발췌)
				n \			
			(비 공	/H)			

- 다) 2016. 4. 8. '종오리' 감축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33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30)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43>과 같이 2016. 4. 8.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개최된 '제2회 계열유통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아래 <표 44>와 같이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3월말 기준 업체별 보유 종오리 (632,721수)의 10% 수량을 감축하되, 25주령~70주령 이내의 종오리를 감축(약 63,272수)"하고, 71주령 이상 4,962수는 당연도태 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43> 오리협회의 업무연락 문서(소갑 제19호증, 발췌)

(비공개)

<표 44> 2차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소갑 제20호증, 발췌)

오리 수급안정을 위한 2차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

- (사)한국오리협회-

(중략)

- 2. 종오리 감축(도태) 추진 방안
- 종오리 감축 기준
 - 3월말 기준 업체별 보유 종오리 (632,721수)의 10% 수량을 감축하되, 25주령~70주령 이내의 종오리를 감축. (약 63,272 수)
 - ※ 71주령 이상은 당면도태 4,962수

합계: 68,234수

(2) 실행

³⁰⁾ 모란의 김□□ 대표이사는 2016. 4. 8.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합의 내용을 오리협회로부터 전달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71호증, 김□□ 진술조서 참조).

피심인들은 위 2차 종오리 감축 추진방안에 따라 아래 <표 45>와 같이 총 34 55,701수의 종오리를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상용오리 생산량이 약 540만수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班 45> 2016. 5. 26.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자료(소갑 제22호증, 발췌)

오리수급조절(종오리감축 등) 결과 23 May (mosticers-)

- □ 1차 종오리 감축(도태) 결과
- O 감축 내용
 - 시행시기 : '16. 2. 11 ~ 16. 3. 15
 - 주령별 감축(도태) 수

도태 주령별	도태수(암컷)	도태비율	刊 고
25주~30주령	7,669	6.8%	
31주~40주령	9,986	8.8%	
41주~50주령	2,903	2.6%	* 이 이 어디 게임 이는 420명 수 기고 세계
51주~60주령	15,221	13.4%	* 육용오리 생산 약 430만수 감소 예상
61주령 이상	77,681	68.5%	
계	113,460	100%	

□ 2차 종오리 감축(도태) 결과

- O 감축 내용
 - 시행시기 : '16. 4. 25 ~ 16. 5. 10
 - 주령별 감축(도태) 수

도태 주렁별	도태수(암컷)	도태비율	비고				
25주~30주령	600	1.1%					
31주~40주령	9,396	16.9%					
41주~50주령	7,844	14.1%	* 이 이 스 키 케키 스타 E40 티 스 키 3 - 웨 키				
51주~60주령	12,364	22.2%	* 육용오리 생산 약 540만수 감소 예상				
61주령 이상	25,497	45.8%					
계	55,701	100%					

- 라) 2016. 11. 10. '종오리·종란' 감축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조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³¹⁾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46>과 같이 2016. 11. 10. 광주 서구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16 계열유통 협의회'에 참석하여, 오리수급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각 업체별 부화중인 종란(주령별 30% 해당 수량)도태", 중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현재 사육중인 산란 종오리 중 60주령 이상의 종오리 조기 도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³²⁾

<표 46> 2016. 11. 10.자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문서(소갑 제25호증. 발췌)

2016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 1. 일시 : 2016. 11. 10(목), 16:00
- 2.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207호)
- 3. 참석자 : 총 11명 참석 (대리참석 포함)

(다솔) 박철완 전무 (주원산오리) 이우진 대표 (사조화인코리아) 이창주 대표 (정다운) 김인호 이사 (참프레) 육진현 부장 (삼호유황오리) 이세종 대표 (유성농산) 이춘길 대표 (성실농산) 김상덕 대표

4. 회의결과

가. 오리수급안정을 위한 중·단기 대책 추진

- 1) 단기대책
 - 각 업체별 부화중인 종란(주렁별 30% 해당 수량)도태
 - 도태 시행일자를 정하여 시행하고 각 업체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도태 현장 방문·점검
- 2) 중기대책
 - ① 각 업체별 현재 사육중인 산란 종오리 중 60주령 이상 종오리 조기 도태
 - ② 2017년도 종오리(PS)배정물량 조정 검토

³¹⁾ 모란의 김□□ 대표이사는 2016. 11. 10.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의 내용을 오리협회로 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71호증 김□□ 진술조서 참조).

³²⁾ 종란을 감축할 경우 해당 종란에서 부화(약 4주 소요) 후 사육(약 6주 소요)·도압될 상용오리 물량이 감소하므로, 부화 과정 중에 있는 종란을 폐기하면 약 6주~10주 후부터 즉시 오리 신선육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종란 감축은 단기 대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종오리를 감축할 경우, 해당 종오리가 생산할 종란(종오리는 25~78주령까지 종란을 생산하며, 평생 250~290개의 종란을 생산)에서 부화·사육·도압(총 10주 이상 소요)될 상용오리 물량이 감소하므로, 60주령 이상의 종 오리를 폐기할 경우 그 주령에 따라 약 10~28주 후에나 오리 신선육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종오리 감축은 중기 대책으로 볼 수 있다.

(2) 실행 여부

96 위 2016. 11. 10. 합의는 같은 해 11월 중순 AI(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실행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7~48>과 같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 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7> 오리협회 허○○의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발췌)

- 문) 2016. 11. 10. 계열유통 협의회에서 참석자들 간에 결정된 오리 수급 관련 사항은 무엇이었나요?
- 답) 오리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오리 종란을 30% 도태하고, 중기 대책으로는 60주령 이상의 산란 종오리를 조기 도태(70주령도 되지 않은 종오리를 도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도태라고 합니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u>다만 그</u>후 얼마 되지 않아 AI가 터졌기 때문에 실제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표 48> <u>다솔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u>

- 문) 진술인 등 2016. 11. 10. 계열유통 협의회 회합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종오리· 종란 감축을 합의한 후, 개인 부화장(종오리 농장)들에 대해서도 종오리·종란 감축을 요구하기로 하였나요?
- 답) (전략) <u>다만, 2016년 11월에는 종오리·종란 감축 합의를 한 뒤 얼마 안 있어</u> AI가 발생하여 감축 합의도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4) 2016~2017년 가격 인상 합의
- 가) 배경 및 개요
- 37 2015년 말경부터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부터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아래 <표 49>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다.

<표 49> <u>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u>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8,642	8,614	8,990	9,283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471
2016	6,597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33	7,781
2015	8,581	8,000	8,597	8,817	8,500	8,500	8,500	8,500	8,017	7,774	8,000	7,339

*자료출처: 오리협회 제출자료

- 38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져 통오리를 호수 구분 없이 판매하는 '몰아통'이 빈발하고, 토치비나 발골비와 같은 제비용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 39 이에, 피심인들은 오리 신선육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앞서 살펴본 종오리·종 란 감축 등의 생산량 감축 합의 이외에 직접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가격 요소를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 이 이러한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는 주로 피심인들33)의 영업본부장들이 실제 모임(이하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이라 한다)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통오리 20호(2kg)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합의하였던 인상일이 되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서로 합의 내용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도 하였으며, 각 합의의 구체적인 과정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나) 2016. 1. 13. 합의 (통오리 판매가격 및 제비용의 하한선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41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³⁴⁾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1. 13.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오리〇〇〇'에서 계열화 영업책 임자 회합을 갖고, 다음 <표 50~53>과 같이 통오리 20호의 판매가격을 생산원가인

³³⁾ 모란은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하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피심인들'이라 함은 모란을 제외한 피심인들을 말한다.

³⁴⁾ 성실은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2016. 11. 10.부터 참가하였다.

6,000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외 통오리 판매가격은 통오리 20호를 기준으로 호수(100g)당 100원을 가감하여 책정하기로 하고, 토치비는 최소한 100원, 발골비는 최소한 60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35)

<표 50>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 문) 그렇다면 <u>2016. 1. 13.일 대전 소재 식당인 '대전 오리 ○○○'에 참석한 계열사</u> 영업책임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합의하였습니까.
- 답) 해당 모임에는 1)진술인 본인과 … 총 7명이 참여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하 생략)
- 문) 1차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고 합의를 한 것인가요?
- 답) 그 당시 계열사들이 오리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져 '몰아통(20호 가격에 전체 호수를 그냥 판매하는 행위)'이라고 해서 호수를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금지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산원가 이하로 팔리고 있는 통오리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 제비용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누었습니다.

몰아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① 100g당 단가에 대해서는 100원은 받자고 합의를 하였고, ② 토치비용이 회사별로 달랐기 때문에 토치(신선육을 그을리는 것) 비용은 최소한 100원은 받자는 합의를 하였고, ③ 발골비(통오리를 발골육으로 만들기 위해 뼈를 발라내는 것)는 500원-700원 정도 되는데 최소 600원 정도는 받자는 이야기 등 제비용에 대한 합의도 하였습니다.

<표 51> <u>참</u>프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1차 모임에서는 무엇을 논의하였습니까.
- 답) ····· 원가 미만으로 판매하지 말자 ···· 몰아통을 없애기 위해 100g당 100원 ~200원을 받자는 이야기와 토치비용을 ··· 최소한 100원은 받자는 것, ··· 최소 한 발골비를 600원 정도는 받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표 52>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³⁵⁾ 이 사건 관련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은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가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솔,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8개사의 관련자들은 모두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합의 내용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다운의 경우 회의 참석 사실 등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정다운 장○○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상무가 회합에 참석한 후 합의 결과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다른 참석자들이 정다운도 회합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다운도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 참석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관련자들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경우에도 주원의 이◎⊙ 부장과 정다운의 이◎◎ 상무로부터 합의결과를 전달받아 합의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가격 인상 합의 방식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가격인상 합의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생략한다.

- 문) 1차 모임에서는 무엇을 논의하였습니까.
- 답) <u>통오리를 생산원가인 6,000원 이하로는 팔지말자, 100g당 가격차등 적용</u>하자는 이야기와 <u>토치비용을 최소 100원은 받자, 발골비는 600원 정도는 받자</u>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표 53> 자연일가 강目目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 문) 1차 모임에서는 무엇을 논의하였습니까.
- 답) <u>오리고기 100g당 가격을 차등적용하자는 이야기와 토치비용을 최소 100원은</u> <u>받자, 발골비는 600원 정도는 받자</u>는 등 오리고기 기본적 가격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2) 실행

아래 <표 54~55>와 같이,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2016. 1. 13. 합의 내용의 실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표 54>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 문) 2016.1.13.일 1차 합의는 언제부터 실행되었나요?
- 답) 1차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통오리 기준가격에 대한 하한금액을 합의하였던 것은 아니고, 제비용 등을 앞으로 그렇게 지키자 정도였기 때문에 실행이 언제부터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하 생략)

<표 55> <u>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u>

- 문) 오리고기 100g당 가격 차등 적용을 하자는 합의는 언제부터 실행되었나요.
- 답) 실행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차 모임에서는 구체적이 통오리 기준가 격에 대한 하한금액을 합의하였던 것은 아니고, 제비용 등을 앞으로 그렇게 지키자 정도였기 때문에 실행이 언제부터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하 생략)

다만, 정다운의 영업시장 정보망 카톡방³6)(이하 '정다운의 영업카톡방'이라 한다)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정다운의 김 대표가 2016. 3. 3. 아래 〈표 56~57〉과 같이 합의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솔의 박○○도 다음 〈표 58〉과 같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진술한 점, 참 프레의 이●●도 다음 〈표 59〉와 같이 합의사항을 영업사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6. 1. 13.의 합의 내용이 실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56>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 내용(소갑 제28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6-03-03 15:08:33 >

김ⅢⅢ: 영업은 가격인상후 가격인하가 된 거래처가 있는지 확인하여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강○○: 영남지점 경쟁사별 영업사원과 대리점 확인해보니 5,500원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호수별 100원 토치는 +200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아직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곳은 가격인상전 재고를 판매하거나, 상인들이 없는말을 떠보는 것입니다. 성실과 주원산오리는 호수별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인상하지 않은 가격이 당사와 비슷합니다.

김⊙⊙ : <u>수도권지역 참프레 사조 토치추가비용을 받지않는다는 소문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u> <u>상황으로 거래처에서 퍼트리는 루머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으로 인상된것으로 파</u> 악됩니다

구○○: 회사별로 인상통보는 다 된 것으로 파악되고 서로서로 가격인상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에 받았던 재고들이 싸게 나오면서 정확한 인상 여부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고 다음 주 정도에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 모란과 사조 통화하니 토치비 +200원 받는다고 합니다.

윤図 : 호남충청 거래처 확인해보니 참프레 200수 미만 5,600원 호수별, 200수 이상은 5,500원 호수별입니다. 사조, 신촌 5,500원 호수별이고 더커드 거래처별로 5,500 ~6,000원 호수별 유성농산이 자연푸드에 약속 단가보다 낮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표 57> <u>정다운 강○○의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u>

- 문) 16.3.3일 정다운 카톡방을 보면 김 대표로 추정되는 (알수없음)이 가격인 하가 된 거래처가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u>김 대표가 가격인상 합의에 대한 타사 실행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u> 한 것입니다. (이하 생략)

<표 58> <u>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u>

³⁶⁾ 정다운의 김 대표와 영업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오리업계의 정보 및 시세 등을 공유하는 대화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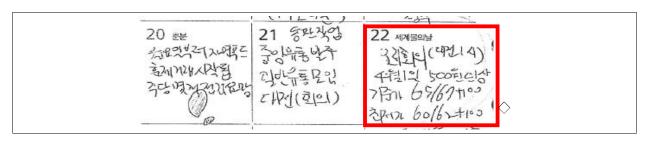
- 문) 2016.1.13.일 1차 합의는 언제부터 실행되었나요?
- 답) 1차 모임에서는 …… 다만, 토치비용 100원, 발골비 600원, 100g당 100원을 지키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기는 하였습니다.

<班 59>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오리고기 100g당 가격 차등 적용을 하자는 합의는 언제부터 실행되었나요.
- 답) …… 본인은 <u>동 모임 이후 참프레의 영업사원들에게 구두로 호수당 금액을 차등</u> <u>적용하여 받으라고 하는 것 등을 전달</u>하였습니다. 또한, 오리협회 업무연락을 통해 유통 시세 협조에 관한 사항을 연락받아 참프레는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 다) 2016. 3. 22. 합의 (통오리 20호 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44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 업책임자들³⁷⁾은 2016. 3. 2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 자 회합을 갖고, 다음 <표 60~68>과 같이 2016. 4. 1.부터 '통오리 20호(2kg) 가격'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 액은 100원으로,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³⁸⁾으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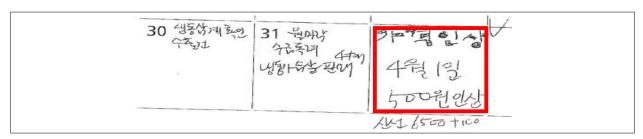
<표 60> 2016. 3. 2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³⁷⁾ 위 각주 3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합의 가담자 중 일부는 회합에 참석하지 않고, 추후 합의 결과를 전달받고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고, 회합 불참자에게 합의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은 주원의 이⊙⊙, 정다운의 이⊙⊙(2016년 6월 주원 이⊙⊙ 퇴사 이후)이 담당하였다.

³⁸⁾ 기준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되 최저가격을 6,000원으로 정하여 할인폭을 최대 500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할인폭 관련 합의 방식은 이후 합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하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생략한다.

<표 61> <u>2016. 4.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u>



<표 62>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 문) 진술인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3.22일에 "오리회의(대전 1시) 4월1일 500원 인상, 기준가 65/67+100, 최저가 60/62+100"이라고 적혀 있는데 해당 메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답) 16.3.22일에 오리 계열사 영업책임자 모임이 대전에서 오후 1시에 있었다는 것이고, …… 이때 2016.4.1.일부터 각 계열사 통오리 20호 가격(이하 '기준가격')을 약 5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따라서 신선통오리 기준가격은 6,500원, 토치통오리 기준가격은 6,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이하 '1차 합의')한 것입니다. …… +100원은 통오리 호수별 금액차이를 100원으로 하기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 표 63>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해당 모임에서 어떠한 것이 합의되었나요?
- 답) 수첩 내용을 보니 해당 모임에서 <u>계열화 영업책임자들이 2016.4.1.일부터 각 계열사 통오리 20호 가격(이하'기준가격')을 약 500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신선통으리 기준가격은 6,500원, 토치통오리 기준가격은 6,700원으로 인상, 신선통으리 20호 최저가를 6,000원, 토치통오리 최저가를 6,200원, 통오리 호수별 금액차이를 100원으로 하기로 합의(이하'1차 합의')하였던 것 같습니다.</u>

<표 64>

사조 도〇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발췌)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3.22일에 "오리회의(대전 1시) 4월1일 500원 인상, 기준가 65/67+100, 최저가 60/62+100"이라고 적혀있는 데 이때 진술인은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 답) …… 수첩에 써 있는 것처럼 500원을 올리자는 식으로 구체적 금액 가격합의를 하였고, 4월1일과 같이 구체적 인상 일자도 합의한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문) 해당 모임에서 어떠한 것이 합의되었나요?

<표 65>

답) 수첩 내용을 보니 해당 모임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들이 2016.4.1.일부터 각 계열사 통오리 20호 가격(이하 '기준가격')을 약 500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신선통으리 기준가격은 6,500원, 토치통오리 기준가격은 6,700원으로 인상, 신선통으리 20호 최저가를 6,000원, 토치통오리 최저가를 6,200원, 통오리 호수별 금액차이를 100원으로 하기로 합의(이하 '1차 합의')하였던 것 같습니다.

<표 66> 삼호 고〇〇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3.22일에 "오리회의(대전 1시) 4월1일 500원 인상, 기준가 65/67+100, 최저가 60/62+100"이라고 적혀있는 데 이때 진술인은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 답) 제가 해당 날짜에 참석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u>계열사 영업책임자들이</u> 모이면 통오리 기준가격을 얼마로 놓자는 이야기는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표 67> <u>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u>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3.22일에 "오리회의(대전 1시) 4월1일 500원 인상, 기준가 65/67+100, 최저가 60/62+100"이라고 적혀있는 데 이때 진술인은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 답) 제가 해당 날짜에 참석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면 <u>16.4.1.에 가격인상 합의를 하였을 것입니다.</u> (이하 생략)

<표 68> <u>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u>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3.22일에 "오리회의(대전 1시) 4월1일 500원 인상, 기준가 65/67+100, 최저가 60/62+100"이라고 적혀있는 데 이때 진술인은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 답) 제가 해당 날짜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u>이</u> ○○ 본부장에게 합의 결과를 전달받았던 것 같습니다.

(2) 실행

45 다솔, 참프레, 주원, 정다운 및 자연일가 등은 아래 <표 69~75>와 같이 2016. 4. 1.에 기준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고, 할인폭의 상한(최대 500원) 합의도 실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69>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 문) 2016.4.1.일에 실행하기로 하였던 1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u>다솔의 경우 2016.4.1.일부터 신선통오리 기준가격을 6,500원</u>, 최저가격을 6,000원 으로 인상하여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솔의 경우 다음 모임 전까지 합의한 신선통오리 기준가격인 6,500원을 계속해서 유지하였습니다.

<표 70> 참프레 이●● 추가 진술서(소갑 제48-1호증, 발췌)

- 문) 참프레는 계열사 영업책임자들이 1차 합의한 것을 실행하였습니까.
- 답) 「참프레 시세가격표」를 보았을 때 <u>신선통오리 기준가격이 500원 인상되어</u> 6,500원이 된 것으로 보아 1차 합의를 실행하였고, 참프레는 통상 기준가격에서 500원까지 DC를 하였던 바 최저가격은 6,000원으로 실행하였습니다.

<표 71>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 문) 주원산오리는 계열사 영업책임자들이 1차 합의한 것을 실행하였습니까.
- 답) 「기준가격 변동현황」을 보았을 때 <u>신선통오리 기준가격이 300원 인상되어</u> 6,500원이 된 것으로 보아 1차 합의를 실행한 것 같습니다.

< 주원의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

시점	통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호수별 차등금액	
Al-B	기준가격	최저가격*	오구될 사이는 역	
2016-03-31	6,200	5,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2016-04-01	6,500	6,0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46 특히, 정다운의 경우, 다음 <표 72~74>의 내용을 보면 2016. 4. 1. 김□□ 대표가 "확인해봅시다"라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경쟁사의 단가인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정다운도 가격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72>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 내용(소갑 제28호증, 발췌)

< 생성일시 : 2016-04-01 11:59:48>

김᠁᠁: 주문이 적습니다. 확인해봅시다

강○○: 각 지점별로 추가주문 받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경쟁사별 단가인상 반영 여부도 확인

해주세요

<표 73> <u>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u>

- 문) 진술인은 16.4.1일 카톡에 보면 "오늘 경쟁사별 단가인상 반영여부도 확인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경쟁사와 16.4.1일자로 단가 인상 합의를 했는데 타사가 가격인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정다운만 실행한 상황이라 주문이 적으니 김 대표가 "확인해봅시다"라고 이야기 한 것이고, 저도 경쟁사가 단가인상 합의를 실행했는지를 영업사원들에게 확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3.22일에 "오리회의(대전 1시) 4월1일 500원 인상, 기준가 65/67+100, 최저가 60/62+100"이라고 적혀있는데 가격인상 합의 금액이 이것인가요?
- 답) <u>네. 이◎◎ 상무가 오리 계열화사업자 영업책임자 모임에 다녀와서 16.4.1일</u> 500원을 인상하여 기준가격을 6,5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전달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표 7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16.04.01	6,500	6,000	100
16.04.18	7,000	6,5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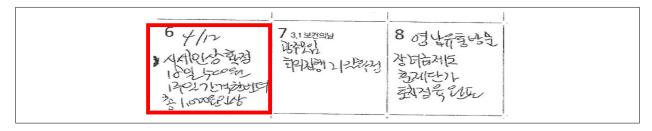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 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표 75> <u>자연일가 강目目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u>

- 문) 자연은 16.4.1일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인상하였나요?
- 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은 정다운, 다솔과 비슷하게 기준가격을 놨기 때문에 메이저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였다면 자연도 이렇게 인상하였을 것입니다.

- 47 다만, 사조, 삼호, 유성 및 신선은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 간의 기준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³⁹⁾
 - 라) 2016. 4. 12. 합의⁴⁰⁾ (기준가격 인상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48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 업책임자들은 2016. 4. 1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아래 <표 76~78>과 같이 기준가격을 2016. 4. 18.과 1주일 후인 4. 25. 에 각각 순차적으로 500원씩 올려 총 1,000원을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을 7,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6> <u>2016. 4. 6.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u>



<표 77>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 문) 진술인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4.6일에 "4/12 시세인상 확정 18일 500원 1 주일 간격 한 번 더 총 1,000원 인상"이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메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답) <u>2016.4.18.일부터 … 통오리 기준가격을 500원 인상하고, 1주일 후에 통오리 기</u> 준가격을 한 번 더 500원 인상하여 총 1,000원을 인상하자는 내용 …(이하 생략)

³⁹⁾ 사조는 기준가격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삼호는 당시 고○○ 이사가 자신의 노트북에 기준가격을 관리하여 왔는데, 2017년 3월 퇴사 이후 해당 노트북이 초기화(포맷)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유성은 강○○ 전무가 사용하던 노 트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관련자료가 소실되었다. 신선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기준가격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 2016. 4. 12. 합의 이후부터는 4 개사(사조, 삼호, 유성, 신선)의 가격인상 합의 실행 여부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⁴⁰⁾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13차례)의 과정 및 실행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016. 4. 12. 이후의 각 합의 과정 및 내용 등은 주요 진술과 증거자료만 인용하여 간단히 기재한다.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 문) 계열사 영업책임자 4차 모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2016.4.12.일 대전 중국음식점 이○○에서 계열사 영업책임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참석자는 2-3차 모임과 유사하였습니다. …… 2016.4.18.일부터 각 계열사 통오리 기준가격을 500원 인상하고, 1주일 후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한 번 더 500원 인상하여 총 1,000원을 인상하자는 합의(이하 '3차 합의')를 하였습니다. 신 선통오리 기준가격을 7,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한 것입니다.

<표 79> 삼호 고〇〇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4/12 시세인상 확정 18일 500원 1주일 간격 한번 더 총 1,000원 인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때 진술인은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 답) ……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u>애초 취지는 1,000원을 인상할</u> 필요가 있었는데 한 번에 이를 바로 인상 시키면 시장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2 번에 걸쳐서 500원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1,000원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 실행

<표 78>

대용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주원은 아래 <표 80~83>과 같이 2016. 4. 18. 기준 가격을 500원 인상하였으나, 1주일 후인 4. 25.에 500원 추가 인상 합의는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41)

<표 80> <u>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u>

- 문) 2016.4.18.일 2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다솔은 2016. 4. 18.일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500원 인상하여 7,000원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지만, 타사들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도 하여 1주일 이후 500원 추가 인상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⁴¹⁾ 위 각주 3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하에서는 4개사(사조, 삼호, 유성, 신선)의 합의 내용 실행 여부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며, 자연일가도 정다운에 합병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표 81>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2016.4.18.일에 2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u>참프레는 2016. 4. 18.일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500원 인상하여 7,000원이 되었는바</u>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 <u>일주일 이후에 500원을 추가 인상하자는 것은 실행하지</u>않은 것 같습니다.

<표 82>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 문) 주원산오리는 계열사 영업책임자들이 2차 합의한 것을 실행하였습니까.
- 답) 「기준가격 변동현황」을 보았을 때 신선통오리 기준가격이 <u>2016.4.18.일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500원 인상하여 7,000원이 되었는바 500원 부분은 합의를 실행</u>한 것 같습니다. 다만, 500원 추가 인상은 실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주원의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

시점	통오리 신선	육 기준가격	호수별 차등금액
A1-0	기준가격	최저가격*	¥T2 400 7
2016-04-01	6,500	6,0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2016-04-18	7,000	6,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2016-05-02	6,500	6,0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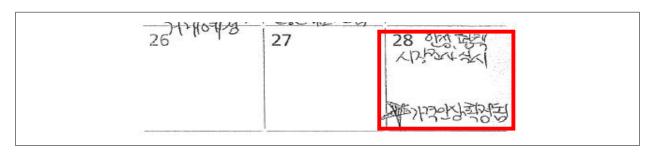
<표 83>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ı	16.04.01	6,500	6,000	100	
Ì	16.04.18	7,000	6,500	100	
Ì	16.04.25	7,000	6,5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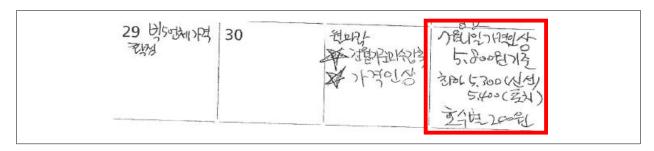
-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 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마) 2016. 6. 28. 합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50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⁴²⁾,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6. 28.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〇〇'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아래 〈표 84~88〉과 같이 2016. 7. 1.부터 기준가격을 5,800원⁴³⁾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200원으로,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4> 2016. 6. 28.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표 85> 2016. 7.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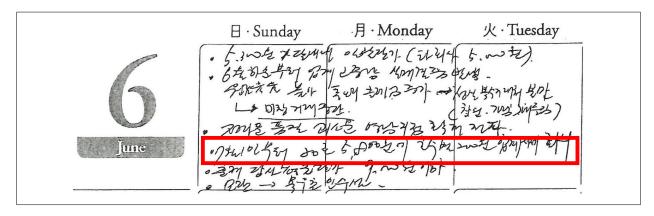
<표 86> <u>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u>

- 문) 진술인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6.28일에 "가격인상 확정됨", "7월1일 가격인상 5,800원 기준 최하 5,300(신선) 5,400(토치) 호수별 2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메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답) 2016.6.28.일 대전 중국음식점 이○○에서 계열사 영업책임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 16.7.1일부터 각 계열사 통오리 기준가격을 5,8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는 신선통오리는 5,300원, 토치통오리는 5,400원, 호수별 가격 차이는 200원으로 하자는 합의(이하 '3차 합의')를 하였습니다.

⁴²⁾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서 연락 및 합의 결과 전달 역할을 하였던 주원의 이⊙⊙ 부장이 2016. 6. 17.에 퇴사하였다. 이후에는 정다운의 이⊙⊙ 상무가 모임 개최 및 회의 결과를 관련자들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69호증, 참프레 이●● 진술조서 등 참조).

^{43) 2016. 4. 12.} 회합에서 기준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2016년 6월에 오리 신선육 공급 과다로 인해 기준가격이 5,500원까지 하락하였다.

<표 87> 2016년 6월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표 88>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 문) 진술인은 16.6월 수첩에 "7월1일부터 20호 5,800원에 호수별 200원 업계시세회의"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무슨 내용인지?
- 답) <u>이◎◎ 상무가</u> 오리 계열화사업자 <u>영업책임자 모임에 다녀와서 합의 결과를</u> 전달하여 준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 51 다만, 주원의 안○○ 본부장⁴⁴⁾은 아래 <표 89>와 같이 2016. 6. 28. 회합에 참 석하지 않았으며, 합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표 89> <u>주원 안○○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발췌)</u>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6.28일에 "가격인상 확정됨", "7월1일 가격인상 5,800원 기준 최하 5,300(신선) 5,400(토치) 호수별 200원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때에 진술인은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나요?
- 답) 해당 모임에 <u>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u>
- 문) 해당 모임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들이 16.7.1일부터 각 계열사 통오리 기준가 격을 5,8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는 신선통오리는 5,300원, 토치통오리는 5,400원, 호수별 가격 차이는 200원으로 하자는 합의(이하 '4차 합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 답)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u>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u>됩니다.

^{44) 2008. 9. 1.} 주원에 입사하여, 2015. 3. 1.부터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52 그러나 참프레의 이●●, 유성의 강□□ 및 다솔의 박○○은 아래 <표 91~93>과 같이, 주원의 경우 이⊙⊙이 퇴사한 이후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 이⊙⊙의 후임인 안○○ 본부장이 참석하거나 합의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주원이 가격 인상 합의 탈퇴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원은 지속적으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통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45)

<표 90> 참프레 이●● 진술서(소갑 제69호증, 발췌)

<u>계열화사업자 영업책임자 모임에는</u> <u>주로</u> 1)다솔 박○○ 전무 또는 이◇◇ 본부장 2)정다운 이◎◎ 상무, 3) 주원산오리 이⊙⊙, <u>안○○ 본부장(이⊙⊙ 본부장 후임)</u>, …… 9)모란식품 영업 담당이사(성명불상)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하 중략)

이 중에 다솔, 정다운, 주원산오리, 사조화인코리아, 참프레 등 5개 업체는 메이저 업체로 계열화사업자 영업책임자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5개 업체들도 사정에 따라 나오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 사정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 본부장이 모임 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원산오리 이ⓒ 본부장이 퇴사한 이후에는 이 역할은 정다운의 이ⓒ 상무가 이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 주원산오리 이ⓒ 본부장이 퇴사한 이후에는 주원산오리에서는 안ⓒ 본부장이 모임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92> <u>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u>

- 문) 주원산오리에 이⊙⊙ 본부장이 퇴사하였고, <u>주원산오리가 합의 가담자에서 탈퇴</u> 하였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나요?
- 답) 그렇지 않습니다. <u>주원산오리 안○○ 본부장도 한번 정도 모임에 인사하러 온적이 있고</u>, 이⊙⊙ 본부장이 16.6월 정도인가 퇴사한 이후 모임이 자주 없었기때문에 <u>주원에 안○○ 본부장을 많이 보지 못하긴 했지만</u>, <u>주원산오리가 합의</u>가담자에서 탈퇴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표 91> <u>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u>

⁴⁵⁾ 안○○ 본부장은 2016. 6. 28.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가격 인상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 가담이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원은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에 지 속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하 2016. 6. 28. 합의 내용부터는 이와 같은 내용을 생략한다.

- 문) 계열사 영업책임자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영업책임자 모임에는 1)다솔의 경우 진술인 본인인 박○○, …… <u>5)주원산오리는 이⊙⊙</u> 본부장, 안○○ 본부장(이⊙⊙ 본부장이 퇴사한 이후) …… <u>주로 참석</u>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2) 실행

53 다솔과 참프레는 아래 <표 92~93>과 같이 2016. 7. 1. 기준가격을 5,800원으로 인상하였고 최저가격은 5,3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2016. 6. 28.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班 92>

다솔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 문) 2016.7.1일에 4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다솔은 2016.7.1일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5,800원, 최저가를 5,300원으로 하여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班 93>

참프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2016.7.1일에 3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참프레는 <u>2016.7.1일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5,800원, 최저가를 5,300원으로 하여</u>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 54 정다운은 아래 <표 94>와 같이 3일 후인 2016. 7. 4.에 기준가격을 5,800원, 최저가격은 5,3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9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u>료 발췌(소갑 제30호증, 발췌)</u>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16.04.25	7,000	6,500	100
16.07.04	5,800	5,300	100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 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55 한편, 주원은 아래 <표 95>와 같이 2016. 6. 30. 이전부터 기준가격을 6,500 원46)으로 책정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기준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으나, 2016. 6. 30. 에 최저가격을 5.500원으로 낮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95>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32호증, 발췌)

시점 통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호수별		호수별 차등금액	
Al-a	기준가격	최저가격*	포구크 시하다 기
2016-05-02	6,500	6,0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2016-06-30	6,500	5,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바) 2016. 8. 26. 합의47) (통오리 23호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다솔, 정다운, 참프레 등 3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아래 <표 96~104>와 같이 유선 연락을 통해 2016. 8. 26.부터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책정하고, 호수 당 가감하는 금액은 2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무더운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오리 성장이 둔화되어 시장에서 고(高)규격 통오리 수요가 많아지므로, 위 3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기준가격으로 이용하던 통오리 20호가 아닌 23호 고(高)규격 통오리 가격을 기준으로 오리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

<표 96> 2016. 8. 26.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⁴⁶⁾ 주원은 평소 경쟁사들보다 500원 이상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소갑 제50호증, 주원 이⊙⊙ 진 술조서 참조).

^{47) 2016. 8. 26} 합의는 유선상으로 가격 인상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일이 특정되지 않고 가격 인상 시기만 특정된다.

<표 97>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내용⁴⁸⁾(소갑 제28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6-08-25 16:55:03 >

이⊙⊙ : 가격올리기로 했다니? 구○○ : 아직 얘기 없었습니다.

(중략)

이⊙⊙: 가격인상하기로 결정했단다

구○○ : 얼마요? 이상황이면 아무도 안올릴꺼 같은대

이 \odot \odot : <u>정확한건모르고 참프레는 낼(26일)부터 인상</u>, 그르게..참프레 영업사원 죽을라구하더라.

내일부터 기준가 300원씩 올리기로 했단다 기준가가 얼마야ㅎㅎ

구○○: 욕먹기 딱 좋네요

이⊙⊙ : 기준가 6000원 토치 100원 큰다마 200원은 알아서, 지금하고 별 차이 없는뎅

구○○: 지금하고 같네요.

이⊙⊙ : 그니깐. <u>고시가 6500원 최저가 6000원. 20-22호 작은 다마는 알아서 받고.. 23호는</u> 6500원.. 큰다인상

구○○: 네 참프레 내일부터 올린다고 하나요?

이⊙⊙ : 웅. 니네도 올린다고 하드만

구○○: 네 저흰 월요일(29일) 내일(26일)은 참프레 다솔이라고 하네요.

이⊙⊙ : 다솔도 연락왔구 6100원 시작

<표 98> 다솔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 문) 주원산오리 이⊙⊙ 본부장과 정다운 구○○ 지점장의 16.8.25일 카톡대화를 보면 "가격인상하기로 결정했단다", "얼마요? 이상황이면 아무도 안올릴꺼 같은대" 라는 대화에서 16.8.26일에 300원 단가인상도 계열사들끼리 논의한 금액을 같이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그렇게 보입니다.

<표 99> <u>다솔의 일반유통방 카톡방⁴⁹⁾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u>

< 생성 일시 : 2016-08-25 14:32:53 >

이◇◇: 내일부터 300원 인상됩니다. 대리점 통보바랍니다.

임○○, 정○○ 등 : 네 알겠습니다.

정○○: <u>가격통보하니 꼴리는대로 하라는 답변</u>… <u>타업체도 내일부터 가야되는디. . 또 우</u> 리만 욕 먹는듯. . .아직 연락받은거 없다하네요

⁴⁸⁾ 정다운의 구○○과 주원의 이⊙⊙ 본부장 간의 대화 내용이다.

⁴⁹⁾ 다솔의 이◇◇ 본부장, 정○○ 차장, 임○○ 대리 등 영업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이며, 이하 '다솔의 유통카톡방'이라 한다.

< 표 100> 다솔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 문) 16.8.25일에 진술인이 일반유통방에서 "내일부터 300원 인상됩니다"라고 공유하자 정○○ 차장이 "타업체도 내일부터 가야되는디. 또 우리만 욕 먹는 듯"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u>다른 업체들도 같이 가격인상을 하기로 했는데</u> 다솔만 가격인상 통보를 대리점에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 답)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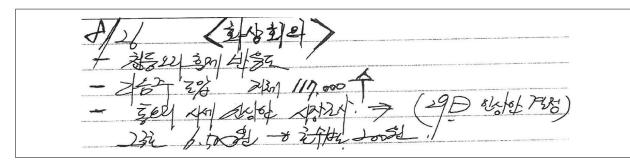
<표 101>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 문) 주원산오리 이⊙⊙ 본부장과 정다운 구○○ 지점장의 16.8.25일 카톡대화를 보면 "가격인상하기로 결정했단다", "얼마요? 이상황이면 아무도 안올릴꺼 같은대" 라는 대화에서 16.8.26일에 300원 단가인상도 계열화사업자들이 논의한 금액을 같이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이 당시에는 계열사 영업책임자 모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u>전화로 가격</u> 인상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저는 <u>정다운 이◎◎ 상무와 참프레 이</u> ●● 상무와는 전화를 자주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전화 연락을 하면서 가격인 상에 대해 합의하여 인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 문) 카톡 이⊙⊙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고시가 6500원 최저가 6000원. 20-22호 작은 다마는 알아서 받고.. 23호는 6500원. 큰다인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 답) 오리가 여름에는 더워서 잘 크지 않기 때문에 호수가 높은 즉 중량이 큰 오리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 <u>23호는 6,500원을 받고</u>, 그것보다 작은 호수는 각 회사별 상황에 맞춰 판매해도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표 102> <u>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u>

- 문) 주원산오리 이⊙⊙ 본부장과 정다운 구○○ 지점장의 16.8.25일 카톡대화를 보면 "가격인상하기로 결정했단다", "내일은 참프레, 다솔이라고 하네요"라는 대화에서 16.8.26일에 단가인상도 계열사들끼리 논의한 금액을 같이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맞습니다. 16.8.26일에 참프레, 다솔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박〇〇 부사장이 연락이 와서 오리 수급상황 및 시황을 보고, 참프레와 다솔이 먼저 선발대로 가격을 올리자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 이 당시 참프레는 오리가 부족했던 시기라서 가격인상 합의(이하 '4차 합의')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표 103> 2016. 8. 26.자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표 104> <u>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u>

- 문) 진술인의 업무수첩에 보면 "<u>8월26일</u> <u>화상회의 : 통오리 시세 인상안 시장조사</u> ⇒ (29일 인상안 결정), 23호 6,500원 → 호수별 200원, 23호 미만 호수 재량별 판매"라고 적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답) 여름철은 더워서 오리가 잘 크지 않고, 큰 중량은 대리점들이 선호가 되기 때문에 23호 이상이 선호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8.29일부터 23호는 6,500원을 받고, 호수별 200원을 적용하되 23호 미만은 알아서 판매하라는 방침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 문) 이것도 가격인상 합의 결과를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 답)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상무에게 합의결과를 전달받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2) 실행

57 다솔과 참프레는 아래 <표 105~106>과 같이 2016. 8. 26.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정다운은 3일 후인 8. 29.에 다음 <표 107>과 같이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05> <u>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u>

- 문) 16.8.26일의 「일일 유통 팀별 적용단가」를 보면 기준가격이 300원씩 인상된 것으로 보여 +300원 인상합의도 다솔은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300원씩 인상하여 23호 가격을 6,500원을 받아 실행하였습니다.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표 106>

- 문) 16.8.26일에 4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네. 저희는 이 당시 오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인상할 수 있어서 고시가 6500원을 지켜서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표 107>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16.07.04	5,800	5,300	100
16.08.29	6,500	6,000	21~23호: 100 / 24호 이상: 200

-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 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사) 2016. 11. 10. 합의 (3단계 규격별 판매가격 설정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종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50) 및 신선 등 9개사의 대표(임원)들은 2016. 11. 10. 광주 서구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계열유통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 9 이 회의에서 위 대표(임원)들은 다음 <표 108~110>과 같이 오리 신선육 규격 체계를 기존의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S: 2.0kg 기준 / M: 2.3kg 기준 / L: 2.6kg 기준"과 같이 3단계 규격 체계로 변경하고, 각 규격의 가격을 '5,500원, 6,500원, 7,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모색하였다.51)

⁵⁰⁾ 성실의 김〇〇 대표는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계열화협의회에는 참석하였다. 이는 오리협회가 작성한 계열화협의회 회의결과 자료(본문 <표 108> 참조) 등을 통해 확인된다.

⁵¹⁾ 주원의 이員員과 삼호의 이□□은 2016. 11. 10.의 가격 합의 사실을 부인하나, 본문 <표 10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1. 10. 계열화협의회에 주원의 이員員과 삼호의 이□□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문 <표 109>와 같이 해당 계열화협의회의 총무 역할을 수행하던 유성 이○○의 업무수첩에 합의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점, 당시 가격 합의에 대해 주원의 이員員과 삼호의 이□□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원과 삼호도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108> 2016. 11. 10.자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소갑 제25호증,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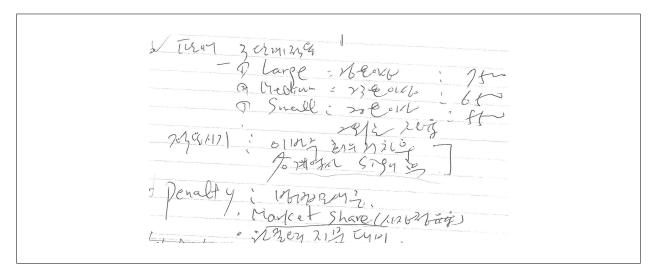
2016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 1. 일시 : 2016. 11. 10(목), 16:00
- 2.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207호)
- 3. 참석자 : 총 11명 참석 (대리참석 포함)

(중략)

- 나. 오리 유통가격 조사 체계(협회가격게시)개선
- 1) 생체오리
 - (현행) 3.0kg 기준 → (개선) 3.4kg 기준
- (2) 신선육
 - (현행) 20kg 기준 → (개선) S: 2.0kg 기준 / M: 2.3kg 기준 / L: 2.6kg 기준

<표 109> 2016. 11. 10.자 유성 이○○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발췌)



<표 110> 유성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 문) 열람하신 업무수첩 기재 내용을 보면, 2016. 11. 10. 계열유통협의회 회합에서 오리 판매가격 관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답) 네, 2016. 11. 10. 회합에서 <u>오리 신선육 규격 체계를 종전의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3단계 규격 체계(small, medium, large)로</u> 변경하고, 각 규격의 가격을 5,500원, 6,500원, 7,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u>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모색</u>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러한 규격 체계 변경 및 가격 인상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60 다솔의 박○○은 2016. 11. 10. 계열화협의회 회합에 참석한 후, 합의결과를 다솔의 이◇◇에게 전달하였는데, 다솔 이◇◇은 아래 <표 111>과 같이 다솔의 유통카톡방에서 합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표 111> 2016. 11. 16.자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6-11-16 07:33:54 >

이◇◇ : 대표단 회의내용 -

종오리20만수도태. 부화기 병아리 적정수량 도태

가격 2~3주후

5,500원20이하

6,500원23이상

<u>7,500원24이상</u>

가격 불이행시 3억배상의 내용도 있습니다

확정은 아님에 아직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가격올릴수 있음에 주문독려 바랍니다 이에 냉동 판매에도적극적으로 추진바랍니다

< 생성 일시 : 2016-11-18 11:30:33 >

김⊙⊙ 과장: 14. 통오리 단가 인상예정(3단계 단가 테이블적용함,

(20호이하 5,500원 / 23호까지 6,500원 / 24호이상 7,500원)

<표 112> <u>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u>

- 문) 16.11.16일에 다솔 일반유통방 카톡을 보면 "가격 2~3주후 5,500원 20이하, 6,500원 23이상, 7,500원 24 이상. 가격 불이행시 3억 배상의 내용도 있습니다."라고 16.11.10일 대표단 회의내용이라고 전달되고 있는데 이를 보았을 때이때에도 통오리 기준가격 관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답) 2016. 11. 10. 오리계열사 대표 모임에서 오리 신선육 규격 체계를 종전의 중량별호수 체계 ···에서 <u>3단계 규격 체계(small, medium, large)로 변경하고, 각 규격의 가격을 5,500원, 6,500원, 7,500원으로 책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들었습니다.</u> (이하 생략)
- 문) 16.11.10일 계열유통협의회 모임에는 박○○ 대표를 대신하여 육○○ 이사가 참석하였는데 육○○ 이사가 이를 전달해 주었습니까?
- 답) 네. 육○○ 이사가 오리협회 모임에 다녀오면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6.11.10일 ······ 규격체계 변경 및 가격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후에 계열사 영업본부장 모임이 열렸고, <u>가격 불이행시 3억 배상 이야기와 같은 내용들은</u> 계열사 영업책임자 모임에서 들었습니다.

(2) 실행 여부

61 피심인들은 기존의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3단계 규격체계로 갑자기 가격체계를 변경할 경우 유통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⁵²⁾하여 3단계 규격별 가격 책정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13> 유성 이○○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 문) 열람하신 업무수첩 기재 내용을 보면, 2016. 11. 10. 계열유통협의회 회합에서 오리 판매가격 관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답) (생략) 실제로는 이러한 <u>규격 체계 변경 및 가격 인상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u> 2016년 11월 당시 사료업체에 사료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오리 생산자들 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표 114> <u>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u>

- 문) 카톡내용에 보면 이◇◇ 본부장이 계열화협의회. 계열사 대표모임 결과를 "가격 2~3주후 5,500원 20이하, 6,500원 23이상, 7,500원 24 이상. 가격 불이행시 3억 배상의 내용도 있습니다."라고 전달하였고, 김⊙⊙ 과장이 …… 전달한 내용에도 "14.통오리 단가 인상예정(3단계 단가 테이블적용함(20호 이하 5,500원 / 23호까지 6,500원 / 24호 이상 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적인 가격 합의 결과가 있었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생략) 그러나, 일일 팀별 유통 단가표를 보았을 때 이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합의는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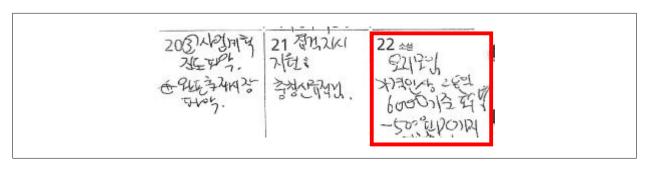
<표 115> <u>정다운 김□□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발췌)</u>

- 문) 열람하신 업무수첩 기재 내용을 보면, 2016. 11. 10. 계열유통 협의회 회합에서 오리 판매가격 관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답) …… 그러나, <u>실제로는 이러한 규격 체계 변경 및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u>습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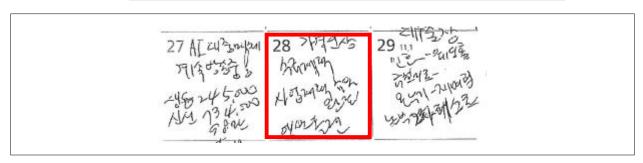
⁵²⁾ 오리 신선육은 피심인들(계열화사업자) → 大도매점 → 小도매점 → 소규모 마트, 재래시장 또는 식당의 거래과정을 거쳐 유통되는데, 피심인들이 오리 신선육 규격체계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 호수 (중량)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大도매점 이하 단계의 유통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이었다.

- 아) 2016. 11. 22. 합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16~120>과 같이 2016. 11. 22.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2016. 11. 28.부터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합의하였다.

<표 116> 2016. 11. 2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표 117> 2016. 11. 28.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표 118> 2016. 11. 22.자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 생성일시 : 2016-11-22 15:20:13 >

이 : <u>오늘 오리사들 모임 결과입니다. 28일 월요일부터 6,000원 고시가 이며 500원 디씨</u>까지 확정된 결과임을 전달드립니다. 호수별 100원씩이며 토치+100원입니다.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16.11.10일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열사 영업 책임자들 모임은 16.11.22일에 있었던 것 같은데?
- 답) 네. 맞습니다. …… 영업책임자들은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16.11.28일부터 각 계열사 <u>통오리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u>하고 <u>최대 500원까지만 DC 해주고</u> 호수별 적용금액은 100원, 토치비용은 100원으로 합의(이하 '5차 합의')하였습니다.

<표 120>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⁵³⁾ 대화내용(소갑 제35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6-11-23 09:20:26 >

사조 김■■ : 월욜(28일)부터 20호 6천원(최저55). 호당100원. 오늘부턴 몰빵 금지

정다운 강○○: 저희도 전달 받았습니다.

참프레 남〇〇: 일주일 갈라나..

사조 김■■ : 이번엔 장기전으로 보더라. 우린 냉동도 출고금지다. 이번에 만까이 할려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음.

(중략)

사조 김■■ : 냉동 100만돌파.. 출고금지.. 팔면디짐

참프레 남〇〇: 우리는 냉동없슴. 신선도 매일짤림

사조 김圓圓 : 너거가 선봉에 나서서 올리자고 바람잡았다더라. 우리는 안올릴거라 했고.

참프레 남○○: 가격만 올린다고 끝나나 올라가게끔 해야지 말로만 종오리 감축 이제 안

믿는다 오리쟁이들. 호당 300원씩하면 오리소비 늘어남 센타중량이 내려

가니깐

(2) 실행

<표 119>

63 다솔, 참프레, 사조는 다음 <표 121~123>과 같이 2016. 11. 28.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하는 등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121> <u>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u>

- 문) 2016.11.28일에 4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다솔은 2016.11.28일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6,000원, 최저가를 5,500원으로 하여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53) 5}개 계열화사업자의 영남 지역 영업사원들이 참여하던 카카오톡 대화방이다.

<표 122>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2016.11.28일에 5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참프레는 2016.11.28일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6,000원, 최저가를 5,500원으로 하여 인상 <u>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u>

<표 123>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 문) 16.11.23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에 보면 진술인이 "월욜(28일)부터 20호 6천원 (최저55) 호당 100원. 오늘부턴 몰빵금지"라고 한 것을 보면 합의한 대로 사조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영남 오리쟁이방에 공유한 대로 <u>사조도 합의한 금액을 실행하였습니다.</u>
- 64 정다운과 자연일가는 아래 <표 124~125>와 같이 2016. 11. 29. 기준가격을 6,000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12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16.11.11~16.11.25.	5,500	5,000	100
16.11.29	6,000	5,500	100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표 125> <u>자연일가 강目目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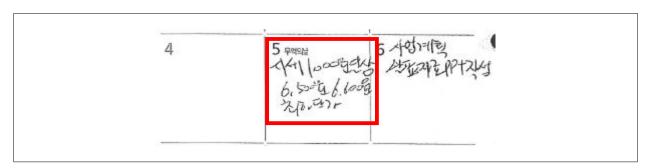
- 문) 자연은 16.11.28일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인상하였나요?
- 답) 정다운이 가격을 인상했다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것입니다.
- 65 참고로 주원은 다음 <표 126>과 같이 2016. 11. 30. 이전부터 이미 기준가격을 7,000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해 오고 있었다.

<표 126>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시점	통오리 신선육	육 기준가격	호수별 차등금액
시급	기준가격	최저가격*	포구를 사하다 기
2016-10-31	7,000	5,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2016-11-30	7,000	5,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 자) 2016년 12월 초 합의 (2016. 12. 5.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66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아래 <표 127~137>과 같이 2016. 12. 5.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ማ 이러한 합의는 2016년 11월 말 발생한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해 계열화 영업 책임자 회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다운 이◎◎의 주도하에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 표 127> <u>2016. 12. 5.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u>



<표 128> 2016. 12. 5.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6-12-05 10:27:32 > 이◇◇: <u>타사 단가도 확인 바랍니다. 지키지 않는 업체가 좀 있는듯하네요</u>

다솔 이 📉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 문) 16.12.5일에 진술인은 다솔 일반유통방에 "타사 단가도 확인 바랍니다. 지키지 않는 업체가 좀 있는듯하네요."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통오리 기준가격 1,000원 인상하여 7,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를 6,5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16.12.5일에 타사의 합의 실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답) 가격 인상 합의를 한 이후에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습니다.
- 문) 16.12.5일 가격인상 합의는 모임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표 129>

답) 이때 모임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정다운 <u>이◎◎ 상무가 전화를 통해 주도</u>를 했던 것 같습니다.

<표 130>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 답) 진술인이 보았을 때 다솔 일일 팀별 유통 단가표 상 기준가격이 7,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카톡 내용이 이◇◇ 본부장이 "타사 단가도 확인 바랍니다. 지키지 않는 업체가 좀 있는 듯 하네요"라고 하는 것을 보니, 가격 인상 합의를 한 이후에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 131> <u>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u>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12.5일에 "시세 1000원 인상 6500원, 6600원 최하단가"라고 적혀있어 통오리 기준가격 관련 합의(이하 '6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답) 통오리 가격을 1,000원 인상하여 ····· 가격 합의를 하였습니다. 즉 <u>기준가격은</u> <u>7,000원으로 합의</u>한 것입니다.

<표 132> <u>2016. 12. 5.자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u>

12/5 <0/32/01>
- 300 1,00051213. / ### (16 The Thing (DEM))/2012 -> 12/5
3m/3 7529/1/24 elst D. day Title

<표 133> <u>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u>

- 문) 진술인의 16.12.5일 수첩내용을 보면 "통오리 1,000원 인상, 냉동 완포. 냉동 통오리 출고 중단" 등의 내용이 있고,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책임자의 수첩에도 16.12.5일에 "시세 1000원 인상"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는 무슨 내용인지?
- 답) "지키지 않는 업체가 좀 있는 듯하네요"와 같은 말은 타사와 가격인상 합의를 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제 수첩과 이◇◇ 본부장 수첩에 동일한 날짜에 통오리 1,000원 인상이 적혀있는 것을 보면 다솔, 정다운 등이 가격인상 합의를 한 결과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표 134>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12.5일에 "시세 1000원 인상 6500원, 6600원 최하단가"라고 적혀있는데 오리고기 가격 관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삼호는 이에 동참하였나요?
- 답) 이 당시에는 Ai가 터져서 모임이 어려울 때라 모여서 합의를 하였던 것 같지 는 않습니다. (이하 생략)

<표 135> 2016. 11. 29.자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6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6-11-29 19:13:15 >

사조 김■■ : 다음주(12월5일)부터 1000원 인상, 들은바 있소? 최저 6500원이라는데...

참프레 남ㅇㅇ : 아직

사조 김■■ : 작당했다는데

주원 김○○ : 저희도 얘기 나왔습니다.

정다운 강○○: 시세 다음주 월요일 소문은 저도 들었습니다....

< 생성 일시 : 2016-11-30 10:02:38 >

사조 김圓圓 : 거래처에 담주(12월5일)부터 1000원 인상 통보하고 있음. 얄짜 없이 올려라

함(창주지시)

(중략)

다솔 정○○ : 우리도 통보 완료

정다운 강○○: 저희도 통보 중입니다.

참프레 남〇〇: xxx들

다솔 정○○ : 참프레는?

사조 김■■ : 가만히 있다가 주워먹기 작전.

<표 136> <u>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u>

- 문) 진술인은 "다음주부터 1000원 인상, 들은바 있소? 최저 6500원이라는데../작당했다는데"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합의결과를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 답) 이것도 아침 영업 회의 시간에 들은 것 같습니다.

<표 137>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12.5일에 "시세 1000원 인상 6500원, 6600원 최하단가"라고 적혀있는데 오리고기 가격 관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성은 이에 동참하였나요?
- 답) 이때는 AI가 터진 시점으로 보입니다. AI가 오면 종오리나 육용오리가 살처분이 되어 오리가 모자라는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물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인상될때는 합의 양태가 달라져 다솔, 정다운, 사조같은 <u>메이저 업체들이 가격인상합의를 하고</u>, …… 이렇게 메이저 업체가 인상 계획을 퍼트리는 것은 후발업체들에게 합의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고, <u>후발업체들도 가격을 인상을 따라가지 않을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에 동참하여 가격을 인상</u>하게 됩니다.

(2) 실행

68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사조는 아래 <표 138~141>과 같이 2016. 12. 5. 기준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격은 6,5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138> <u>다솔 박○○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u>

- 문) 16.12.5일 가격인상 합의를 다솔의 경우 실행하였습니까?
- 답) 16.12.5일에 기준가격은 7,000원, 최저가격은 6,500원으로 실행하였습니다.

<표 139> 참프레 이●● 진술서(추가) (소갑 제69호증, 발췌)

- 문) 16.12.5일에 6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네. 그렇습니다. 신선통오리 최저가격은 6,500원, 기준가격은 7,000원으로 실행하였습니다.

<표 140>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16.11.29	6,000	5,500	100
00	16.12.05	7,000	6,500	100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班 141>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 문) 16.11.30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 대화를 보면 '16.12.5일 통오리 20호 기준가격 1000원 인상'을 사조는 합의한 대로 이행한 것이 맞는지?
- 답) 네. 맞습니다. 사조는 합의한 대로 1,000원 인상을 실행하였습니다.
- 69 주원은 아래 <표 142>와 같이 이미 2016. 11. 30. 이전부터 기준가격은 7,000 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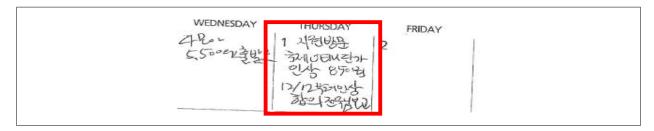
<표 142>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시점	IIM 통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호스병 차드그애		☆ 스병 九 드그애	
A.S.	기준가격	최저가격*	호수별 차등금액	
2016-10-31	7,000	5,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2016-11-30	7,000	5,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 차) 2016년 12월 초 합의 (2016. 12. 12.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70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43~151>과 같이 2016. 12. 12.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기 이러한 합의는 2016년 11월 말 발생한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해 계열화 영업 책임자 회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표 143> 2016. 12.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표 144> 2016. 12. 1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표 145> <u>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u>

- 문) 진술인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12.1일에 "12/12부터 인상합의. 전무님 보고"라고 되어 있고, 16.12.12일 수첩내용을 보면 "시세 1,000원 인상 7,5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메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답) 16.12.1일에 타사와 통오리 시세를 1,000원 인상하여 최저가 7,500원 즉 기준가를 8,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온 사항을 당시 박○○ 전무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표 146> <u>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u>

- 문) 16.12.1일 이◇◇ 본부장 수첩에 보면 "12/12부터 인상합의. 전무님 보고"라고 되어 있고, 16.12.12일 수첩내용을 보면 "시세 1,000원 인상 7,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부장이 16.12.1일에 타사와 통오리 최저가를 1,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온 이후에 진술인에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 답) 네.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가격 인상 결정 여부는 진술인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부장이 16.12.1일에 가격인상 합의를 하고 온 이후에 당시 전무였던 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12.1일에 "12/12부터 인상합의. 전무님 보고"라고 되어 있고, 16.12.12일 수첩내용을 보면 "시세 1,000원 인상 7,5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오리고기 가격 관련 합의(이하 '7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답) 16.12.1일에 16.12.12일부터 …… 즉 기준가를 8,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 당시에 AI가 발생하여 계열사들이 모일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화로 합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표 148>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54) 대화내용(소갑 제36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6-12-12 08:26:48 >

사조 김■■ : 우리는 내일(13일) 출고부터 1000원 인상함. 20호 최저 7500원. 오늘(12일)부터

올리는 회사?

참프레 남○○ : <u>오늘 500, 낼 500</u>

<표 147>

정다운 강○○: 다솔과 정다운은 오늘 올린다고 합니다.

삼호 이○○: 저희는 가격 아직 변동없습니다.

주원 김○○ : 주원은 내일부터 기준가 8,500원 최저가 7,500원

<표 149> <u>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u>

- 문) 진술인은 다른 계열사들이 16.12.12일에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오늘부터 올리는 회사?"라고 단정해서 물어본 것입니까
- 답) 16.12.12일부터 8,000원으로 기준가격을 인상하자는 합의 결과를 전달받아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6.12.12일부터 이를 실행하는 회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표 150> <u>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u>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 16.12.12일 수첩내용을 보면 "시세 1,000원 인상 7,5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오리고기 가격 관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삼호는 이에 동참하였나요?
- 답) 12/12일부터 가격 인상합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 <u>이 당시에도 가격인상</u>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54) 5}개 계열화사업자의 영남 지역 영업사원들이 참여하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2016. 12. 5. 삼호의 이 ○ ○ 이 초대되어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등 6개 계열화사업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표 151> <u>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u>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 16.12.12일 수첩내용을 보면 "시세 1,000원 인상 7,5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오리고기 가격 관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성은 이에 동참하였나요?
- 답) 다솔 등 메이저 업체들이 가격인상 합의가 있었다면 <u>유성도 권유받아 동참하였을 것입니다.</u>

(2) 실행

72 다솔과 정다운은 아래 <표 152~153>과 같이 2016. 12. 12.에 기준가격을 8.000원으로,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책정하였다.

<표 152> 다솔 박○○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 문) 다솔의 16.12.10일 오리 수금방 카톡에 보면 진술인 본인이 "월요일(12일)부터 1000원 인상하세요"라고 지시한 바 가격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다솔 일일 팀별 유통 단가표를 보아도 최저가 7,500원으로 실행되었는데?
- 답) 네. 카톡 및 다솔 일일 팀별 유통 단가표를 보았을 때 16.12.12일에 가격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즉, <u>기준가격은 8,000원, 최저가격은 7,500원</u>을 실행하였습니다.

<표 153> <u>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u>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16.12.05	7,000	6,500	100
16.12.12	8,000	7,500	100

-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73 참프레는 아래 <표 154>와 같이 2016. 12. 12.과 12. 13.에 각각 500원을 인상하여 기준가격은 8,000원,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54> 참프레 이●● 진술서(추가) (소갑 제69호증, 발췌)

- 문) 16.12.12일에 6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네. 다만 16.12.12일에 500원, 16.12.13일 500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 인상하 였습니다. 최저가격은 7,500원, 기준가격은 8,0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 74 사조는 아래 <표 155>와 같이 2016. 12. 13.에 기준가격을 8,000원으로, 최저 가격은 7,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55>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 문) 16.12.13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 대화를 보면 사조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8,000 원으로 인상하여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맞습니다. 16.12.13일에 가격인상을 하여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 75 타사에 비해 500원 이상 가격을 높게 책정해 오던 주원은 아래 <표 156>과 같이 2016. 12. 13.에 기준가격을 8.500원으로,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56>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시점	통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호수별 차등금액
	기준가격	격 최저가격*	포ㅜㄹ 시하다 기
2016-11-30	7,000	5,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2016-12-13	8,500	7,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 카) 2016년 12월 중순 합의 (2016. 12. 19.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76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 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57~164>와 같이 2016. 12. 19.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8,000 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2016년 11월 말 발생한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해 계열화 영업책임자회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표 157>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 문) 16.12.12일 주원산오리 이⊙⊙ 본부장이 "담주 월욜 1000원 인상확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12.13 다솔 일반유통방 카톡에 이◇◇ 본부장이 "통오리 단가도 차주 월요일(19일) 부터 1,000원 인상됩니다."라고 공지하고, 영남 오리 쟁이 방에 타사들도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가격인상을 이행하고 있는데 16.12.19일의 가격인상도 계열사간 가격인상 합의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까.
- 답) 네. 카톡 내용 및 수첩을 보니 <u>16.12.19일에 9,000원으로 기준가격을 인상하고</u> <u>500원까지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합의</u>하여 인상한 것 같습니다. 다만, <u>이때도 전화</u> 통화로 가격인상 합의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표 158> 2016. 12. 19.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표 159> <u>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u>

- 문) 진술인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12.19일에 "8,5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메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답) 16.12.19일에 통오리 최저가를 8,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 결과를 써놓은 것입니다.

<표 160> <u>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u>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12.19일에 "8,5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때에도 가격인상 합의(이하 '7차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답) 16.12.19일에 통오리 최저가를 8,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 결과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즉 기준가격을 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표 161> 6개사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6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6-12-13 08:31:57 >

사조 김■■ : 창주 개거품 물고있음. 오늘부터는 8000원(무조건) 어제 손해본거 만까이 한다함. 다음주 월요일 1000원인상

(중략)

사조 김■■ : 18일 천원인상. 그 담주나 1월초부터 또 1000원 인상에 호수당 200원 적용 한다함. 아주 돈독이 올라 빨대 꽂아서 쪽빨아버릴 생각임.

(중략)

사조 김■■ : 오늘 2016.12.13(화) 오리 가격 인상 통보! 신선 20호 기준 @8,000원. 호수별 +100원 추가. 토치 +100원 추가. 친환경 +200원 추가. 등급 +100원 추가. 완 포 발골비 +800원 추가 적용합니다. -사조화인코리아-

(중략)

주원 김〇〇 : <u>저희도 천원 오른다고 오늘 얘기하네요</u> 훈제도 올릴거라고 본사에서 연락 와서 대리점 사장들한테 욕먹고 있습니다.

< 생성 일시 : 2016-12-19 08:34:03 >

사조 김■■ : <u>*금일 판매시세 공지</u>/ 오리: 전주 8,000원 판매 거래처에 한해 출고일, 수량

비고칸에 적고 8,000원 적용. 정상가는 8,500~9,000원 진행. 통신보안!!

사조 김■■: 꼬바르지말것!! 지난주 비싸게 판 보상임(오늘 하루만..)

주원 김○○: 네 ㅋㅋ

<표 162> 사조 김圓■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 문) 진술인은 16.12.18일에 또 천원이 인상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한주 단위로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답) 이것도 사조 영업회의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u>각 계열사들이 합의하여 가격을 인상한다면 3주 연속으로 가격을 1,000원씩 계속 올리는 것이 가능</u>합니다. 여름에 오리 물량이 딸리고 할 때는 매일 가격이 올라 14,000원까지 간적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문) 진술인은 다른 계열사 영업직원들에게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을 왜 굳이 공지하며 이를 위에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입니까?
- 답) 가격을 16.12.19일자로 9,000원 통오리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사조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는데 일부 거래처들만 하루만 그보다 저렴한 8,000원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합의사실과 달리일부 거래처만 하루에 한정하여 싸게 파는 것이니 이를 사조가 가격인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공유한 것입니다.

<표 163>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 문) 다른 피심인 소속 임원의 2016년 업무수첩에 보면 16.12.19일에 "8,5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때에도 가격인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답)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가 터지면 메이저 업체들이 가격인상 합의를 하고, 큰 업체들이 가격 인상 계획을 퍼트리면 작은 업체들은 가격인상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아 이에 동참하게 됩니다.

<표 164> 삼호 고○○ 진술서(추가) (소갑 제67호증, 발췌)

계열화사업자 영업책임자들은 모임을 통해 가격을 합의한 것뿐만 아니라 전화로 가격인상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솔, 정다운, 사조 등 규모가 큰 업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나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전화로 전달하며 이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물론, 삼호의 상황에 따라 참여할 때도 있었고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리시장이 가격이 오를 때는 메이저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면 후발주자들이 이를 따라가지 않을 유인이 없기는 합니다. 저는 주로 사조 도○○ 본부장, 유성농산 강○○ 전무와 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2) 실행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사조는 아래 <표 165~168>과 같이 2016. 12. 19.에 기준가격은 9,000원, 최저가격은 8,500원으로 인상하였는바,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다만, 주원은 다음 <표 169>와 같이 2016. 12. 19.에 기준가격을 9,000원으로, 최저가격은 8,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65> 다솔 박○○의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 문) 다솔은 16.12.19일에 가격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습니까.
- 답) 네. 다솔은 <u>9,000원으로 기준가격을 인상하여 합의를 실행</u>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은 8,500원을 실행하였습니다.

<표 166> 참프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16.12.19일에 7차 합의가 실행되었나요?
- 답) 네. 그렇습니다. <u>참프레는 기준가 9,000원 최저가 8,500원으로 가격인상을 실행</u>하였습니다.

<표 167>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16.12.12	8,000	7,500	100
16.12.19	9,000	8,500	100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丑 168>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 문) 16.12.19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 대화를 보면 통오리 20호 기준가격을 9000원으로 인상하여 사조는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그렇습니다. <u>일부거래처만 8,000원으로 할인</u>해서 판매한 것이지 <u>기준가격은</u> <u>9,000원으로 인상하여 합의를 이행</u>한 것이 맞습니다.

<표 169>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시점	통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호수별 차등금액
	기준가격	최저가격*	¥T2 400 - 1
2016-12-13	8,500	7,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2016-12-19	9,000	8,0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 타) 2017년 1월 말 합의 (2017. 2. 1.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78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및 유성 등 6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70~176>과 같이 2017. 2. 1.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최저가격은 9.500원(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9 이러한 합의는 5대 계열화사업자 중 규모가 큰 다솔과 정다운이 먼저 합의를 한 후, 참프레, 사조, 주원에게 합의 결과를 전달하였고, 이후 소규모 계열화사업자인 유성이 순차적으로 합의 가담을 권유받아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170> 2017. 1. 25.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7-01-25 10:00:48 >

이○○: 31일부터 1000원 인상한다합니다. 업체 통보해주세요.

임○○: 네 아까 얘기들었습니다.

홍○○: 생산지원에서 2월 1일로 단가인상 일자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권○○: 2월1일부터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 : 2월1일부터 인상입니다.

김⊙⊙ 등 : 네 알겠습니다.

이◇◇ : 시세인상 타사 움직임 파악바랍니다. 여기에 공유합시다.

김⊙⊙ : 정다운은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이◇◇ : 말은 나왔나요

김⊙⊙ 과장 : 얘기는 있다고 합니다.

이 ◇ : 네

김⊙⊙ : 저희가 올렸다는 얘기는 다 퍼진것 같습니다.

이◇◇ : <u>우리가 주체는 아니고 결정권 가진 사람들이랑 이야기 한거고 제일 큰 업체부터</u> 올리는 부분이라 합시다.

김⊙⊙ : 네 제얘기는 저희는 올리는게 확정되었다는 얘기가 소문이 났다는 얘기를 드리는게 잘못전달된거같습니다^^타사도 알아보겠습니다.

<표 171> <u>다솔 이◇◇</u>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 문) 17.01.25일 영업직원방에 권찬우 대리가 "정다운이랑 둘이서 올리자고 그랬다 네요."라는 내용과 다솔 일반유통방에 진술인이 "우리가 주체는 아니고 결정권 가진 사람들이랑 이야기 한 거고 제일 큰 업체부터 올리는 부분이라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카톡을 보면 <u>다솔과 정다운이 가격인상 합의를 하여 17.2.1일부터 기준가격을 1,000원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u>
- 답)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진술하였듯이 <u>정다운 이◎◎ 상무가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u> 가격인상을 주도하였고, 다솔도 이에 같이 가담한 것 같습니다.
- 문) 진술인이 카톡에서 "제일 큰 업체부터 올리는 부분이라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답) 17년도부터는 <u>다솔, 정다운과 같은 큰 업체가 주도하여 가격을 올리면 이를 나</u> 머지 업체들이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다솔 박〇〇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문) 17.01.25일 영업직원방에 권○○ 대리가 "정다운이랑 둘이서 올리자고 그랬다 네요."라는 내용과 일반유통방에 이◇◇ 본부장이 "우리가 주체는 아니고 결정권 가진 사람들이랑 이야기한 거고 제일 큰 업체부터 올리는 부분이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카톡을 보면 진술인이 정다운과 가격 인상 합의를 하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표 172>

- 답) 정다운 이◎◎ 상무와 가격인상 합의를 한 것이 맞습니다. 당시 AI로 인해 오리 물량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솔과 정다운은 그 당시 2개업체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였고, 2개 업체가 가격인상 합의를 하고 이를 참프레, 사조, 주원산 등과 같은 오리 A 그룹 업체들이 알게 되면 합의에 동참하는 형태로 진행하 였던 것 같습니다.
- 문) 16년에는 영업책임자들이 모여서 통오리 기준가격 인상합의를 하다가 <u>17년도</u> 에는 정다운-다솔 두 업체만 모여서 합의를 하거나 하는 모습으로 양태가 변 동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 답) 16년도 말에 AI가 터져서 17년도 초반에는 계열사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는 상황이었고, … 다솔, 정다운과 같은 메이저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주도하여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는 선두 업체들이 가격 인상합의를 하고, 후발업체들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참여하는 행태로 바뀐 것입니다.

<표 173> <u>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u>

- 문) 17.01.25일 ····· 다솔 일반유통방에 ······이야기하고 있는 카톡을 보면 다솔과 정다운이 가격인상 합의를 하여 17.2.1일부터 기준가격을 1,000원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참프레 영업 직원들에게 정다운과 다솔이 가격인상합의를 하여서 가격인상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다운과 다솔에게 확인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박○○전무, 이◎◎ 상무와 전화를 했을 때 다솔과 정다운은 10,000원으로 기준가격을인상하기로 했으니 합의에 가담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하 생략)
- 문) 다솔, 정다운, 사조와 같은 MS가 <u>큰 업체들이 합의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면 참프레와 같은 후발 업체들은 이를 따라 올리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u>
- 답) <u>네. 그렇습니다.</u> 오리 시장은 … 각 업체들이 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두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면 후발 업체들이 이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표 174>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7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1017-02-01 08:29:00 >

사조 김◉◉ : 가격변동 공유 부탁합니다. 더커드 올렸어요? 우린 아직인데 올리려고 xx함.

주원 김○○: 저희도 아직입니다.

다솔 권○○: 저희는 금일부터 1000원 인상했습니다.

사조 김■■ : 인상해서 얼마죠?

다솔 권○○: 기준가 10000원에 최대 500원 디씨까지 입니다!

사조 김■■ : 오늘 출고부터 시행? 정다운, 참프레는?

참프레 남○○ : 오리 없다

다솔 권〇〇: 넵

(중략)

사조 : 일단 낼부터 1,000원 인상(9,500-10,000원)한다고 구라치고있음. 일단 약빨이 먹힘.

낼봐서 진짜 올리던지 말던지하고..

<표 175> <u>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u>

- 문) 17.01.25일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직원이 …… 이야기하고 있는 카톡을 보면 다솔과 정다운이 가격인상 합의를 하여 17.2.1일부터 기준가격을 1,000원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인은 이러한 합의 결과를 전달 받아 "더커드올렸어요?"라고 실행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까?
- 답) 그 당시 분위기가 <u>각 회사들이 가격을 17.2.1일자로 1,000원 정도 인상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다솔도 그렇게 올린다는 소식을 들어서 가격인상을 이행했는 지를 물어본 것</u>입니다. 다솔이 오리 물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다솔이 주로 가격인상을 주도해왔고 따라서 다솔이 가격인상을 하였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더커드(다솔의 계열사)가 가격인상을 했는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표 176> <u>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u>

- 문) 17.01.25일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직원이 …… 이야기하고 있는 카톡을 보면 다솔과 정다운이 가격인상 합의를 하여 17.2.1일부터 기준가격을 1,000원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인은 이러한 합의 결과를 전달받으신 바가 없으신가요?
- 답) 메이저 업체들은 …… 서로 자주 연락을 하다보면, 언제부터 이 정도로 가격을 올려 받자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u>다솔과 정다운이 이렇게 합의하였다면, 유성도 이에 동참하였을 것입니다.</u>

(2) 실행

80 아래 <표 177~181>과 같이, 다솔은 2017. 2. 1.에, 사조는 2017. 2. 2에, 정다운은 2017. 2. 3.에 위 합의 내용대로 기준가격을 10,000원으로, 최저가격은 9,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77> 다솔 박○○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 문) 17.02.01일 영남 오리쟁이방에 다솔 권○○ 대리가 "저희는 금일부터 1000원 인상했습니다. 기준가 10,000원에 최대 500원 디씨까지입니다"라고 공유한 것을 보면 통오리 기준가격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정다운과 합의한 내용을 실행한 것이 아닙니까.
- 답) <u>17.02.01일에</u> 다솔 일일 팀별 유통 단가표를 보았을 때 <u>기준가격이 10,000원으로 인상</u>되어 <u>정다운과 합의한 가격인상을 실행</u>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은 9,500원으로 실행하였습니다.

<표 178> 사조 김圓■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 문) 17.02.02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 대화를 보면 통오리 20호 기준가격을 10,000원 으로 인상하여 사조는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맞습니다. 사조는 17.2.2.일에 10,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표 179>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16.12.19	9,000	8,500	100
17.02.03	10,000	9,500	100

-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 참프레는 다음 <표 180>과 같이 2017. 2. 1.부터 2.3.까지 기준가격을 9,800원으로, 최저가격은 9,3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80> 참프레 이●● 진술서(추가) (소갑 제48-1호증, 발췌)

- 문) 참프레는 17.02.01일에 기준가격을 9,300원, 17.2.3일에 9,8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결국 다솔, 정다운 10.000원 기준가격 인상합의에 동참한 것이네요?
- 답) 앞서 말씀드린대로 참프레의 경우 10,000원으로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17.2.1일에 300원만 가격을 인상하여 9,300원으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이고, 타사들이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들 가격인상 합의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되어 17.2.3일에 500원을 추가 인상하여 기준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최저가격은 9,3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82 한편, 주원은 아래 <표 181>과 같이 2017. 2. 13.에 기준가격을 10,000원으로, 최저가격은 9,5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만, 유성은 해당 기간의 기준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55)

<표 181> <u>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u>

시점	통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기준가격 최저가격*		호수별 차등금액
Al-B			포 T 큰 시 5 급 ㅋ
2017-01-31	9,000	9,0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2017-02-13	10,000	9,500	20호 이하 -100원/20호 이상 +100원

파) 2017. 7. 19. 합의 (기준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83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및 유성 등 7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82~187>과 같이 2017. 7. 19.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ㅇㅇ'에서 계열 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같은 해 7. 26.부터 기준가격을 11,0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합의하였다.

⁵⁵⁾ 위 각주 38)과 같이, 유성은 당시 영업본부장 강○○ 전무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관련자료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82> 영남 오리쟁이방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갑 제38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7-07-19 11:08:58 >

사조원 김■■ : 오늘 협회 모임입니까?

다솔 장○ : 가격 올리자는 분위기 형성 되는거 같네요

< 생성 일시 : 2017-07-25 13:04:34 >

다솔 장○ : 다향오리 낼부터 500원 인상합니다. / 20호 11,000원 출발 호당100원 / 다

음주 월요일(31일)부터 호수당 200원 적용합니다

사조원 김圓圓 : 멋져요.

다솔 장○ : 따라올리셔요^^

사조원 김미미 : 아랫것들이 뭔 힘이 있나요. 유능하신 사업부장님들이 결정하셔야죠.

< 생성 일시 : 2017-07-26 08:58:27 >

사조원 김圓圓 : 금일 주문부터 오리 가격 인상합니다.(기존에서 1,000원 인상!!) 20호 기준

11,000원 호수당 100원 적용합니다.

사조원 김■■ : 갑자기 올려라 하네요. 냄새가 남..

주원 김 O O : <u>혁ㅠ 저희도 오늘부터 최저가 10,000원 기준가 11,500원 호수 100원입니다.</u>

(중략)

다솔 장○ : 금일 500원 인상 / 20호 11,000원 출발 호수당 100원 / 다음주 월요일(31일)부터

호수당 200원 적용 (이하 생략)

<표 183>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 문) 17.07.19일 및 17.07.25일 17.7.26일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에 보면, 계열사 영업 책임자 모임이 있었고, …… 17.07.19일 모임에서 통오리 기준가격을 500원 인상하여 11,000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답) 이 당시 계열사 영업책임자 모임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카톡 내용과 사조원, 정다운, 참프레, 주원, 다솔 등 여러 업체가 가격을 일제히 11,000원으로 인상한 것을 보면 계열사들끼리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올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표 184> <u>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u>

- 문) 진술인은 17.7.19일에 오리협회 모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오리협회 모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답) 사조 영업 직원 회의에서 들은 것이고, 아마도 오리 계열사 영업본부장 모임을 말한 것 같습니다.

<표 185>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17.07.24일 다솔의 일반유통방(2)에 "시세 수요일(26일) 오릅니다. 500원 인상. 차주 월요일(31일) 호수별 200원"이라고 공유된 것을 보면 17.07.19일 모임에서 통오리 기준가격을 500원 인상하여 11,000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답)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u>카톡을 보았을 때 합의를 하여 가격을 인상</u>한 것 같습니다.

<표 186> 삼호 이○○ 진술조서(소갑 제73호증, 발췌)

- 문) 17.07.26 영남 오리쟁이방에 보면 사조 김■■ 차장이 가격인상 정보를 공유한 이후 "갑자기 올려라 하네요. 냄새가 남..", "짜장면 쳐드셨구만"이라는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답) 제가 이 당시에는 …… 영업본부장 모임에 참석하거나 가담한 적은 없습니다. 삼호는 메이저 업체가 아니어서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가격인상에 직접 가담하였다기보다 …… 메이저 5개 업체가 가격인상 합의를 하고, 이것을 알려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업체였습니다. 좀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유인이 없었고 …(이하 생략)

<표 187> <u>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u>

- 문) 17.07.26 영남 오리쟁이방에 보면 사조 김■■ 차장이 가격인상 정보를 공유한 이후 "갑자기 올려라 하네요. 냄새가 남..","짜장면 쳐드셨구만"이라는 반응을 합니다. 이때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인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 답) ······ 통상 만나던 대전 이○○ 식당에서 모임을 하였고, 사조·정다운·주원·참 프레·다솔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보면 <u>16.7.26일부터 가격을 11,000원</u>으로 인상하자고 합의한 것 같습니다.

(2) 실행

84 다음 <표 188~190>과 같이, 다솔과 사조는 2017. 7. 26.에 기준가격을 11,000 원으로 인상하였고, 참프레는 기준가격을 10,8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88>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8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7-07-26 08:58:27 >

사조 : 금일 주문부터 오리 가격 인상합니다.(기존에서 1,000원 인상!!) 20호 기준 11,000원

호수당 100원 적용합니다.

사조: 갑자기 올려라 하네요. 냄새가 남..

주원산 : 헉. 저희도 오늘부터 최저가 10,000원 기준가 11,500원 호수 100원입니다.

(중략)

다솔 : 금일 500원 인상 20호 11,000원 출발 호수당 100원 다음주 월요일(31일)부터 호수당

200원 적용

<표 189>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 문) 17.07.25 정다운 영업시장 정보망방에 보면 사조화인도 통오리 기준 가격을 11.000원으로 인상하여 가격인상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그렇습니다. 사조도 17.7.26일자로 가격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표 190>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 문) 참프레도 17.7.26일 가격인상 합의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u>11,000원으로 가격인상 합의</u>가 되었지만 참프레는 거래처 보호 차원에서 좀 덜 인상된 금액인 <u>10,8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인상</u>하였습니다.
- 55 한편, 정다운은 아래 <표 191>과 같이 2017. 7. 27.에 기준가격을 11,000원으로 로 인상하였으며, 주원은 <표 192>와 같이 2017. 7. 31.에 기준가격을 11,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91> <u>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용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u>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17.06.12	10,500	10,000	100
17.07.27 ~ 17.07.28	11,000	10,500	100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표 192>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시점	기준가격	최저가격	호수별 차등금액
2017-06-19	11,500	10,000	20호 이하-100원/20호 이상 +100원
2017-07-31	11,500	9,000	20호 이하-100원/20호 이상 +100원

- * 최저가격은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하) 2017. 8. 10. 합의 (기준가격 인상 합의)
 - (1) 합의 과정 및 내용
- 86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의 대표 (임원)들은 아래 <표 193~203>과 같이 2017. 8. 10.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감○○○'에서 계열화협의회 회합을 갖고, 2017. 8. 14.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93> 2017. 8. 10. 오리 계열업체 대표자회의 개최결과(소갑 제40호증, 발췌)

오리 계열업체 대표자회의 개최결과

- 1. 일시 및 장소 : 2017. 8. 10(목) 13:00, 대전 도안동 ' 식당
- 2. 참석자 : 계열업체 대표자 9명
- 3. 회의내용
- 오리 계열화사업관련 현안사항 논의

<표 194>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7-08-14 08:07:38 >

이◇◇ : 타사 단가인상여부도 파악하여 올려주세요

김⊙⊙ 등 : 네 알겠습니다.

장○ : 사조, 정다운 오늘부터 1000원 인상 공지 되었습니다.

홍○○: 정다운 거래처별 단가인상 통보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u>8월 14일부터 통오리 기준가 인상이 있어 말씀드립니다.</u> <u>신선 20호 기준 12,000원 호수당 200원 적용</u>이 되며 <u>금번 인상 부분은 업계시세 인상 반영되어 진행 하게</u>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표 195>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9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7-08-14 08:30:34 >

사조 김■■: xxx 오늘부터 12000원입니다.

참프레 남〇〇: xxx들

사조 김■■ : 누구땜에…

주원 김○○: 헉

삼호 이○○: 갑자기 가격 인상/ 힘든거 아닌가요?

사조 김圓圓 : 까라면 까야지.

삼호 이○○: 사전통보 없이 가격 인상되었겠네요

사조 김■■ : 더커드(다솔), 정다운, 사조 선발대. / 동참해. 어차피 없자나. 같이 욕먹어야

덜하지.

다솔 장○ : 호당 100원 적용하는 곳 있나요?

<표 196> <u>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u>

- 문) 17.08.10일에 계열화협의회 모임이 있었고 17.08.14일 다솔의 일반유통방(2)에 홍○○ 과장이 정다운이 대리점에 통보한 거래처별 단가인상 통보내용을 공유하였는데 "8월 14일 부터 통오리 기준가 인상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신선 20호기준 12,000원 호수당 200원 적용이 되며 금번 인상 부분은 업계시세 인상 반영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솔 경우 14일부터 20호 12,500원 호수당 200원 반영됩니다"과 17.08.14일 영남오리쟁이방 카톡에 사조화인 김■■ 차장의 발언을 보면 "오늘부터 12,000원입니다. 누구땜에..", "더커드, 정다운, 사조 선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3개사가 주도적하여 가격을 12,000원으로 인상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17.08.10일 계열화협의회가 있었고, 참석 6개 업체가 17.08.16일에 일제히 12,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한 결과를 보면 <u>계열사 대표들 모임에서 가격인상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u>. 10,000원 이상의 가격은 이미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이는 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문) 오리협회 결과자료에 보면 17.8.10일 계열화협의회 모임에 문〇〇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000원 가격인상 합의를 문〇〇대표에게 전달받은 것입니까?
- 답) 문〇〇 대표가 참석하였다면 그럴 것입니다.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문) 17.08.10일에 계열화협의회 모임이 있었고 17.08.14일 다솔의 일반유통방(2)에 홍○○ 과장이 정다운이 대리점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금번 인상 부분은 업계시세 인상 반영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및 17.08.14일 영남오리쟁이방 카톡에 사조화인 김▣■ 차장의 발언을 보면 "오늘부터 12,000원입니다. 누구 땜에..""더커드, 정다운, 사조 선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17.08.10일에 있었던 계열사 대표 모임에서 선두 업체인 3개사가 가격을 12,000원으로 인상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표 197>

- 답) 17.8.10일에 계열화 대표들이 모임이 있었다면 대표들이 모임을 하면서 가격인상 합의를 하고, 이를 지시하여 3개사의 경우 17.8.14일에 가격을 인상하고, 17.8.15일에 후발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따라 인상한 것 같습니다. 12,000원은 매우 높은 금액이고, 일제히 6개사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하였다면 가격인상합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문) 16년에는 영업책임자들이 모여서 통오리 기준가격 인상합의를 하다가 17년도에는 정다운-다솔 두 업체만 모여서 합의를 하거나 <u>계열사 대표들이 모여서</u> 가격합의를 하는 모습으로 양태가 변동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 답) 17년도 같이 수급이 부족할때는 영업책임자 모임을 하지 않아도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은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는 암묵적 룰이 있었습니다. …… 16년도에도 큰 틀에서 가격 합의를 계열사 대표들이 하였고, 17년도 에는 비슷하게 가격 합의를 계열사 대표들이 하기도 한 것입니다.

<표 198> 참프레 박○○ 진술조서(소갑 제55호증, 발췌)

- 문) 열람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2017. 8. 10. 회합에서 계열사 대표들 간에 통오리 기준가격을 특정 금액으로 책정하기로 논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답) 네, 당시 모임에서 대표이사들 간에 통오리 기준가격 인상을 합의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 2017. 8. 10.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 이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생략)
- 문) 당시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폭을 정한 것은 아니었나요?
- 답) 당시는 시세가 높아 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이런 경우에 가격을 올리면 인상폭은 $500^{\sim}1,000$ 원 단위라는 것을 모든 사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인상하자고만 이야기하여도 서로 비슷한 폭으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표 199>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 문) 17.8.14일 영남 오리쟁이방에 오늘부터 12,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을 공유하시면서 "누구땜에"라는 말을 하신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 이 당시에 다솔이 주도해서 계열사 대표들 모임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누구땜에"라는 말을 한 것은 다솔을 말한 것입니다. 12,000원 가격 인상은 과도한 인상 금액이고 갑작스럽게 인상하면 대리점들 반발이 크기 때문에 답답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표 200> 사조 이⊠⊠ 2차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발췌)

- 문) 열람하신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2017. 8. 10. 계열·유통협의회 대표자회의를 전후하여 오리 판매사업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합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 답) 이□□ 회장 등을 중심으로 종종 오리고기 판매가격을 인상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지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표 201> 유성 이○○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 문) 2017. 8. 10. 계열·유통협의회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관련 합의사항이 있었나요?
- 답)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가격을 최소한 특정 금액 이상으로는 받자고 이야 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일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현재 기억나지 않습니다.

<표 202> <u>성실 김○○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u>

- 문) 열람하신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2017. 8. 10. 계열·유통협의회 대표자회의를 전후하여 오리 판매사업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합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 답) 보여주신 대화내용을 보니 큰 업체들 간에 그러한 논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실농산 같은 작은 업체는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 습니다.

<표 203> 신선 이□□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

- 문) 열람하신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2017. 8. 10. 계열·유통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전후하여 오리 판매사업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 답) 이 당시와 같이 AI가 터져 오리 값이 만이천 원, 만삼천 원까지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사업자들끼리 가격을 인상하자, 이런 때에 돈을 좀 벌어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선의 경우에는 이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통오리 판매가격을 10,000원 이상으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하 생략)

(2) 실행

87 아래 <표 204~206>과 같이, 참프레와 사조는 2017. 8. 15.에 기준가격을 12,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다솔은 같은 날 기준가격을 12,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한편, 정다운은 2017. 8. 14.에, 주원은 2017. 8. 16.에, 기준가격을 각각 12,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만, 삼호는 경쟁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품질 등에서 열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4>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9호증, 발췌)

< 생성 일시 : 2017-08-15 10:21:30 >

삼호 이○○: 다들 가격 인상들 하셨는가요

다솔 장○ : 예

삼호 이○○: 기준단가 호당 단가 좀 부탁드려요

다솔 장○ : 기준가 12,500원 호당 200원

삼호 이○○: 삼호 기준가 11.00 호당 200원/ 차이가 많네

주원 김○○: 주원 수요일부(16일) 기준가 500원 인상합니다. 12,000원 호수당 200원입니다.

최저는 11,000원

사조 김■■ : 사조 무조건 12000원, 200원

정다운 강○○: <u>12000원 200원</u> 참프레 남○○: 12000원 200원

<표 205>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시점	기준 가격	기준 공급가	호수당	
17.07.27 ~ 17.07.28	11,000	10,500	100	
17.08.14	12,000	11,500	200	

^{*} 기준공급가는 최저가격의 개념으로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표 206>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 문) 17.8.15일에 보면 사조는 12,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계열사 대표들이 합의한 가격인상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네 그렇습니다. 사조는 가격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때 가격인상 폭이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었는데 다솔 A등급 회사로 품질이 좋고 인지도도 뛰어나서 다른 회사들보다 500원 더 인상하였습니다. 삼호는 물량도 얼마 되지 않고, 품질도 좋지가 않아 C등급 정도 회사인데 같은 금액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삼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0원 저렴하게 인상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 문) 오리 계열화 사업자들이 가격을 합의할 때 각 회사별로 가격 차등을 두고 가 격합의를 하였다는 말입니까?
- 답) 오리협회 등에서 가격 합의를 할 때 회사 규모를 반영하여 500원에서 1,000원 정도 가격 차이를 용인해 주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유황오리와 같은 작은 회사들은 큰 회사에 비해 인지도,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합의한다는 것이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 인정 근거

8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2012. 4. 12. 계열화협의회 회의자료) 내지 제 92호증(주원산오리 일반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생략)
 -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 ②~⑥ (생략)

2) 법리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 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 에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56)
- 91 여기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 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 5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92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57)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93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58)

94 또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59)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95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⁵⁷⁾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고

⁵⁸⁾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고

⁵⁹⁾ 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참고

구체적으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97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0)

9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61)

다) 하나의 공동행위

9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

⁶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고

⁶¹⁾ 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고

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62)

라. 구체적 판단

- 1) 합의의 존재 여부
- 10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오리 신 선육의 생산량 감축 및 기준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경쟁제한성 여부
 - 가) 관련 시장
- 피심인들이 새끼오리 입식량·종오리·종란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기준가격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모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 위인 점, 오리 신선육은 냉동육과 달리 판매가격이 높으며 저장 기간 등 상품 특 성⁽³⁾도 다른 점, 또한 오리는 맛·육질·소비자 인식 등에서 닭 등과 수요처가 구분되 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시장은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 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 나) 경쟁제한성 여부
- 102 이 사건 피심인들이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공동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행 위 및 기준가격 인상 등을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국내 오리

⁶²⁾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고

⁶³⁾ 오리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7일 정도이고, 냉동육의 유통기한은 2년이다. 오리 신선육의 주요 거래처인 대리점은 신선도 및 품질에서 차이가 있어 오리 신선육을 선호하며, 오리 신선육이 냉동육에 비해 가격이 1,000원 정도 비싼 편이다.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된다.

103 첫째, 입식량·종오리·종란 등의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행위 및 기준가 격 인상 등을 합의한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성담합에 해당한다.

104 둘째, 피심인들이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92.4%에 이르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셋째, 피심인들은 생산량 제한 합의를 통해 시장 내 오리 공급량을 줄임으로 써 오리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리점에 판매하는 기준가격 등을 인상하는 합의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오리 신선육을 기준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들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공동행위로 인해 피심인들이 도·소매상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오리 신선육 가격이 인상되게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오리 신선육 가격까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106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64)

⁶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107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체적인 내용을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아래 와 같이 위 2. 가. 2)의 '2012년 입식량 감축 합의'(이하 '제1행위'라 한다)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고, 위 2. 가. 3)의 '2016년 종오리·종란 감축 합의'(이하 '제2행위'라 한다)와 위 2. 가. 4)의 '2016년∼2017년의 가격인상 합의'(이하 '제3행위'라 한다)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가) 제1행위

제1행위의 개시일 및 종료일은 2012. 4. 12.이고, 제2행위 및 제3행위의 개시일은 2016. 1. 13.로 양 행위 사이의 기간이 약 3년 9개월 정도로 상당 기간 떨어져있어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행위의 합의 내용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따라서 제1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제2행위 및 제3행위까지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행위는 제2행위 및 제3행위와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나) 제2행위 및 제3행위

109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제2행위와 제3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다.

710 첫째, 제2행위와 제3행위는 모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 또는 유지시키 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711 즉, 제2행위는 시장에 공급되는 오리 신선육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내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이 상승 또는 유지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제3행위도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피심인들의 임원들도 다음 <표 207>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班 207>

문)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 있었나요?

[삼호 이□□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발췌)]

답) 당시 <u>과잉생산된 오리 생산량을 줄여 너무 낮아진 오리 가격을 상승시키기</u> 위해 종오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유성 이○○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답) 종오리를 줄이자고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u>오리값이 너무 낮은 수준이었기 때</u> 문에 오리값을 좀 올려보고자 한 것입니다.

[성실 김○○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

- 답) 문건 내용을 보니, 2016. 1. 13.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오리고기 공급과잉으로 <u>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니 종오리를 감축해서 가격을 회복해 보</u>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5째,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법 위반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지속되었다. 즉, 제2행위 및 제3행위 모두 2016. 1. 13. 계열화협의회 및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시작으로 2017. 8. 10. 회합까지 종오리·종란 감축 합의 3차례, 가격 인상 합의 13차례 등 일련의 합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 위반기간 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 기 선째, 제2행위와 제3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은 제2행위에만 가담한 모란을 제외하고,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등으로 동일하고, 회사합병 등에 따른 일부 변동이 있었을 뿐이다.

4) 소결

피심인들의 위 2. 가. 2) 및 3)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 2. 가.
 4)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위 2. 가. 3) 및 4)의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여부

피심인들은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가 축산법 제3조 제1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5) 제5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농식품부가 행정지도를 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농식품부가 수급조절을 이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자조금을 지원하는 반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하므로 농식품부의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어 피심인들로서는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66)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는 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7 첫째, 축산법 제3조 제1항67)은 농식품부장관이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축산계열화사업법 제5조 제1항68)에 따른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는 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⁶⁵⁾ 이하, '축산계열화사업법'이라 한다.

⁶⁶⁾ 농식품부의 2013. 5. 24.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계·종란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사료구매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⁶⁷⁾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⁶⁸⁾ 축산계열화사업법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5째, 대법원 판례69)에 따르면, 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나, 피심인들이 제시한 관련 법률은 위 판례에 비추어 볼때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로 볼 수 없다.

119 셋째, 농식품부의 행정지도 여부와 관련하여, 위 <표 26~28>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들은 먼저 자신들의 생산량 감축 방안을 합의 내지 결정한 후, 해당 방안을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보호할 목적으로 감축 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농식품부가 생산량 수급조절을 직접 지시하거나 강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70)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가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보기도 어렵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해당 여부

지원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제2행위와 제3행위의 합의 내용이 전혀 달라 적용 법 조항도 다른 점,71) 양 행위의 기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72) 등을 고려할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제3행위 자체도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13차례의 불연속적73) 합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⁶⁹⁾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참고

⁷⁰⁾ 참고로, 농식품부는 피심인들에게 축산계열화사업법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출하량 조절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202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하였다.

⁷¹⁾ 제2행위는 생산량 감축 합의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제3행위는 가격 인상 합의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적용대상이다.

⁷²⁾ 제2행위와 제3행위가 서로 겹치지 않는 기간이 약 10개월(2016. 11. 11.~2017. 8. 10.)이나 된다.

⁷³⁾ 예를 들어, 2016. 4. 12.에 기준가격을 7,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가격이 다음 가격합의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후 합의한 가격이 유지되지 않고 하락(가격경쟁)하여 2016. 6. 28. 회합에서는 기준가격을 5,800원으로 합의하였는바, 가격합의 실행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제2행위와 제3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2. 라.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제3행위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기본합의가 있어야만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수회의 합의 중에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74)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122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75)' Ⅲ. 2. 다.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76)

2) 제1행위

⁷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고

^{75)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⁷⁶⁾ 위 2. 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행위는 별개의 공동행위에 해당되고, 제2행위와 제3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제1행위와 제2~3행위로 나누어 각 행위별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2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은 위 2. 라.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리 신선육 제품으로 보아야 하고, 제1행위의 합의는 2012. 4. 12.에 이루어졌으나 이후 합의 사항이 실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행위의 관련매출 액은 아래 <표 209>와 같이 해당 피심인들이 2012. 4. 12.에 판매한 오리 신선육의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班 209>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제1행위)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연번	번 피심인		합의 내용	위반기간	소계	관련매출액
	정	정다운	생산량 감축	2012. 4. 12.~2012. 4. 12.	99,384,228	
1	다	신선	생산량 감축	2012. 4. 12.~2012. 4. 12.	0	154,091,007
	안	자연일가	생산량 감축	2012. 4. 12.~2012. 4. 12.	54,706,779	
2	2 주원		생산량 감축	2012. 4. 12.~2012. 4. 12.	103,778,300	103,778,300
3	3 삼호		생산량 감축	2012. 4. 12.~2012. 4. 12.	43,203,500	43,203,500
4	4 모란		생산량 감축	2012. 4. 12.~2012. 4. 12.	52,113,208	52,113,208
5	5 성실		생산량 감축	2012. 4. 12.~2012. 4. 12.	50,739,100	50,739,100
6 유성 생		생산량 감축	2012. 4. 12.~2012. 4. 12. 8,210,000		8,210,000	
	합계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25 이 사건 제1행위는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 감축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점, 따라서 제1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기준율은 2%를 적용한다.

(3) 피심인별 산정기준

이 사건 제1행위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0>과 같다.

<班 210>

126

피심인별 산정기준 (제1행위)

(단위: 원)

연번	피심인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산정기준
1	정다운	154,091,007	2%	3,081,820
2	주원	103,778,300	2%	2,075,566
3	삼호	43,203,500	2%	864,070
4	모란	52,113,208	2%	1,042,264
5	성실	50,739,100	2%	1,014,782
6	유성	8,210,000	2%	164,200
		8,242,702		

나) 1차 조정

127 위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 준으로 정한다.

다) 2차 조정

- 128 위 피심인들이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징금 고시 IV. 3. 다. (1)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또한 위 피심인들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IV.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 129 다만, 과징금 고시 IV. 3. 가.에 따르면, 2차 조정 시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제1행위)

(단위: 원)

연번	피심인	산정기준	1차 조정	2차 조정	2차 조정 산정기준
1	정다운	3,081,820	-	50% 감경	1,540,910
2	주원	2,075,566	-	50% 감경	1,037,783
3	삼호	864,070	-	50% 감경	432,035
4	모란	1,042,264	-	50% 감경	521,132
5	성실	1,014,782	-	50% 감경	507,391
6	유성	164,200	-	50% 감경	82,100
		4,121,351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30 위 피심인들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 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모란의 경우 2021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 잠식률이 73.6%⁷⁷⁾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131 따라서, 위 금액에서 과징금 고시 IV.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212>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212>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제1행위)

(단위: 원)

피심인	2차 조정 산정기준	부과과징금 조정	부과과징금
정다운	1,540,910	_	1,000,000
주원	1,037,783	-	1,000,000
삼호	432,035	_	0
모란	521,132	70% 감경	0
성실	507,391	-	0
유성	82,100	-	0
	2,000,000		
	정다운 주원 삼호 모란 성실	정다운 1,540,910 주원 1,037,783 삼호 432,035 모란 521,132 성실 507,391	정다운 1,540,910 - 주원 1,037,783 - 삼호 432,035 - 모란 521,132 70% 감경 성실 507,391 - 유성 82,100 -

⁷⁷⁾ 모란의 2021년 말 기준 자본금은 1,003백만 원, 자본총계는 264백만 원이므로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 총계)÷자본금]은 73.6%이다.

- 3) 제2행위 및 제3행위
- 가) 산정기준
 - (1) 위반기간⁷⁸⁾
 - (가) 제2행위
 - ① 개시일
- 133 다만, 참프레와 모란은 2016. 1. 13. 계열화협의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6년 1차 종오리 감축 합의 내용을 오리협회로부터 전달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참프레와 모란은 수급 조절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서를 오리협회에 제출한 2016. 2. 11.을 제2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 ② 종료일
- 피심인들이 2016. 11. 10.에 3차 종오리·종란 감축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1월 중순 AI(조류독감)가 발생하여 살처분 등으로 오리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제2행위의 종료일은 2016. 11. 10.로 본다.
 - (나) 제3행위
 - ① 개시일

⁷⁸⁾ 제2행위와 제3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각 행위의 내용이 다르므로 각 행위의 관련매출액 산정을 위해 각 행위별로 위반기간을 검토한다.

지적으로 기준가격 인상 등의 합의를 시작하였으므로, 제3행위의 개시일은 2016. 1. 13.로 본다.

136 다만, 성실은 2016. 11. 10.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제3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성실의 제3행위의 개시일은 2016. 11. 10.로 본다.

② 종료일

137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⁷⁹⁾' Ⅲ. 2. 나.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공동행위의 구성사업자가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8 이 사건 제3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은 2017. 8. 10. 계열화협의회에서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합의를 중단하고,⁸⁰⁾ 기준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139 즉, 피심인들은 2017. 8. 10. 계열화협의회에서 기준가격 인상을 합의한 이후, 주원은 2017. 8. 21.에, 참프레·정다운·사조는 2017. 8. 24.에, 다솔은 2017. 8. 25.에 기준가격을 각각 인하한 사실이 확인된다.81)

^{79) 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0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들을 말한다.

⁸⁰⁾ 이 사건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7. 27.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 가운데 참프레, 사조와 같이 '육계' 신선육도 같이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있어 피심인들은 2017년 8월 이후에는 오리 신선육 가격인상 합의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48호증 참프레 이●● 진술조서, 소갑 58호증 신선 이□□□ 진술조서, 소갑 제65호증 다솔 박○○ 진술조서 등 참조).

⁸¹⁾ 주원은 2017. 8. 21.에 기준가격을 12,000원에서 11,500원으로 인하하였고, 참프레는 2017. 8. 24.에 기준 가격을 12,0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하하였다. 정다운과 사조는 2017. 8. 24.에 기준가격을 12,000원에서 11,5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다솔은 2017. 8. 25.에 기준가격을 12,5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9호증(영남 오리쟁이방 카톡), 소갑 제33호증(다솔 일반유통 카톡)의 대화내용 및 다솔의 기준가격 변동내역 자료(아래 <표> 참조) 등을 통해 확인된다.

140 한편, 기준가격 책정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3개사(삼호, 성실, 유성)의 경우 5 대 계열화사업자보다 기준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82) 5대 계열화사업자에 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83) 등을 고려할 때, 주요 계열화사업자들이 기준가격 인하를 완료한 2017. 8. 24. 에 기준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고, 해당일을 각 피심인의 종료일로 본다.

141 다만, 다솔의 경우,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공동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⁸⁴⁾ 2017. 8.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3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이 다솔을 제외하고 모두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다솔의 제3행위의 종료일도 2017. 8. 24.로 본다.

142 따라서, 이 사건 제3행위와 관련하여, 주원의 종료일은 2017. 8. 21.로 보고, 나머지 7개사(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삼호, 유성, 성실)의 종료일은 2017. 8. 24. 로 본다.⁸⁵⁾

(2) 관련매출액

(가) 산정 내역

이 사건 제2~3행위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오리 신선육'의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한 군납·학교급식 관련 매출액,86)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 냉동육·부산물·훈제 등 가공제품 관련

시점	기준 가격	최저가격	호수당
2017-08-14	12,500	9,500	호수당 200원
2017-08-24	12,500	9,500	호수당 200원
2017-08-25	12,000	9,000	호수당 200원

- 82) 삼호의 고○○ 및 유성의 강□□은 5대 계열화사업자의 기준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57호증 및 제76호증 진술조서 참조).
- 83) 피심인들의 주요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들은 일반적으로 5대 계열화사업자의 오리 신선육 제품을 선호하였는바, 소규모 계열화사업자들은 5대 계열화사업자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
- 84) 공동행위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회사가 1개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담합의 성립 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참고).
- 85) 참고로, 모란은 제3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 86) 군납 및 학교급식은 경쟁입찰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이 사건 제2~3행위의 합의와 무관하므로

매출액은 제외한다.

144 참고로 제3행위는 피심인들이 대리점들에게 판매하는 오리 신선육의 가격에 대한 합의였으므로, 제3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대리점들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고, 아래 <표 213>과 같이 각 행위별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

<표 21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제2~3행위)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ठो						(단기: 단,	구가가시세 세외)
연 번	피	심인	위반행위	거래처	법 위반 기간	소계	관련매출액
1	└│참프레 ├		제2행위	전 거래처 (대리점 제외)	2016. 2. 11.~2016. 11. 10.	5,528,367,460	34,385,310,110
1			제3행위	대리점	2016. 1. 13.~2017. 8. 24.	28,856,942,650	54,565,510,110
2	7		제2행위	전 거래처 (대리점 제외)	2016. 1. 13.~2016. 11. 10.	47,927,293,413	119,408,572,463
۵) 근	제3행위	대리점	2016. 1. 13.~2017. 8. 24.	71,481,279,050	113,400,572,403
	정	정 다	제2행위	전 거래처 (대리점 제외)	2016. 1. 13.~2016. 11. 10.	9,332,817,574	
	O	운	제3행위	대리점	2016. 1. 13.~2017. 8. 24.	32,346,756,346	
3	다	신	제2행위	전 거래처 (대리점 제외)	2016. 1. 13.~2016. 11. 10.	4,354,479,800	57,578,770,448
		선	제3행위	대리점	2016. 1. 13.~2017. 8. 24.	7,157,706,200	
	운	자연 일가	제3행위	대리점	2016. 1. 13.~2017. 8. 24.	4,387,010,528	
4			제2행위	전 거래처 (대리점 제외)	2016. 1. 13.~2016. 11. 10.	3,172,067,730	50,901,530,734
7		1	제3행위	대리점	2016. 1. 13.~2017. 8. 24.	47,729,463,004	50,501,550,754
5	3	-원	제2행위	전 거래처 (대리점 제외)	2016. 1. 13.~2016. 11. 10.	4,427,562,902	37,639,622,152
	'	Ľ	제3행위	대리점	2016. 1. 13.~2017. 8. 21.	33,212,059,250	01,000,022,102
6	入	남호	제2행위	전 거래처 (대리점 제외)	2016. 1. 13.~2016. 11. 10.	67,600,909	21,276,250,857
U	L	1 -1-	제3행위	대리점	2016. 1. 13.~2017. 8. 24.	21,208,649,948	21,210,200,001
7	5	그란	제2행위	전 거래처	2016. 2. 11.~2016. 11. 10.	12,396,976,817	12,396,976,817
8	ک	- 	제2행위	전 거래처	2016. 1. 13.~2016. 11. 10.	10,812,255,746	25,498,057,946
0	8 성실		제3행위		2016. 11. 11.87) ~ 2017. 8. 24.	14,685,802,200	45,450,051,540
9) 유성		제2행위	전 거래처 (대리점 제외)	2016. 1. 13.~2016. 11. 10.	3,548,901,600	10,079,753,300
		, 0	제3행위	대리점	2016. 1. 13.~2017. 8. 24.	6,530,851,700	10,010,100,000
					합계		369,164,844,827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⁸⁷⁾ 성실의 제3행위 개시일은 2016. 11. 10.이나, 제2행위의 종료일과 겹치므로 제3행위의 위반기간을 2016. 11. 11.~2017. 8. 24.로 조정한다.

145 한편, 위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일부 피심인들 중 대리점에 판매하는 오리 신선육 가격을 '고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오리 신선육 시세를 반영하여 고정단가 계약이 체결된다. 즉, 이 사건 제 3행위의 합의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면 오리 신선육 가격이 높아져 대리점과 체 결하는 고정단가도 높아진다. 따라서, 고정단가 계약체결 시점이 위반행위 기간 중 이면 제3행위의 합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 에 포함되며, 고정단가 계약체결 시점이 위반행위 기간 전이나 후이면 제3행위의 합 의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88)

(나)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46 위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솔은 생산량 감축 합의와 무관한 자신의 2 개 계열사와 거래한 매출액을, 정다운은 B2B·협력업체·대도매점·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매출액을, 삼호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유성축산⁸⁹⁾과의 매출액을, 모란은 급식업체 관련 매출액을 각각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8 첫째, 다솔의 경우, 판례90)에 따르면 계열사가 피심인이 아닌 다른 회사들로 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계열사에 대한 공급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계열사 대상 매출액도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49 둘째, 정다운의 경우, 생산량 감축 합의는 어느 특정 거래처에 한정되지 않고

⁸⁸⁾ 참고로 심사보고서상에 기재된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일부 피심인들이 착오로 관련매출액을 잘 못산정(예: 냉동육 매출액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제3행위의 위반기간을 전·후로 체결한 '고정단가 계약'과 관련된 매출액 등도 수정·보완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심의일(2022. 5. 18.) 이후 피심인들에게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심인들로부터 다시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하였다.

⁸⁹⁾ 삼호는 유성축산이 삼호의 대표이사인 이□□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이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⁹⁰⁾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누1513 판결 참고

시장 전체 오리 신선육 공급을 감소시킨 점, B2B·협력업체·대도매점·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제품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아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50 셋째, 삼호의 경우, 삼호와 유성축산 간의 거래약정서⁹¹⁾ 제4조에 따르면 유성 축산에 대한 공급가격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도매가격은 직접적으 로 이 사건 제3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유성축산이 삼호가 아닌 다 른 사업자들로부터 오리 신선육 제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유성축산에 대한 매출액을 자기거래라는 이유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 은 부당하다.

151 넷째, 모란의 경우, 급식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은 피심인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급식업체와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급식업체들이 학교에 납품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거친다는 이유로 급식업체와 피심인들 간 거래까지 경쟁입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급식업체에 대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위반행위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5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오리 산업 특성상 공동행위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만드는 구조적 배경이 존재하는 점, 전형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부당이득이 크다 고 보기 어려운 점⁹²⁾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3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기준율은 2%를 적용한다.

(4) 피심인별 산정기준

153 위 <표 213>의 관련매출액에 위 4. 나. 3) 가)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

⁹¹⁾ 삼호가 제출한 소을 제9호증 참조

⁹²⁾ 본문 <표 1>과 같이, 다수의 피심인은 최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4>와 같다.

<표 214>

피심인별 산정기준 (제2~3행위)

(단위: 원)

연번	피심인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산정기준
1	참프레	34,385,310,110	2%	687,706,202
2	다솔	119,408,572,463	2%	2,388,171,449
3	정다운	57,578,770,448	2%	1,151,575,408
4	사조	50,901,530,734	2%	1,018,030,614
5	주원	37,639,622,152	2%	752,792,443
6	삼호	21,276,250,857	2%	425,525,017
7	모란	12,396,976,817	2%	247,939,536
8	성실	25,498,057,946	2%	509,961,158
9	유성	10,079,753,300	2%	201,595,066
		7,383,296,893		

나) 1차 조정

154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2차 조정

- 155 참프레, 다솔, 사조, 모란 및 유성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 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IV.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 156 정다운, 주원 및 삼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은 인정되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하며, 성실은 심리 종결 시까지 가

격 인상 합의 사실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별 2차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5>와 같다.

<표 215>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제2~3행위)

(단위: 원)

연번	피심인	산정기준	1차 조정	2차 조정	2차 조정 산정기준
1	참프레	687,706,202	-	20% 감경	550,164,961
2	다솔	2,388,171,449	_	20% 감경	1,910,537,159
3	정다운	1,151,575,408	-	10% 감경	1,036,417,867
4	사조	1,018,030,614	-	20% 감경	814,424,491
5	주원	752,792,443	-	10% 감경	677,513,198
6	삼호	425,525,017	_	10% 감경	382,972,515
7	모란	247,939,536	_	20% 감경	198,351,628
8	성실	509,961,158	-	미감경	509,961,158
9	유성	201,595,066	-	20% 감경	161,276,052
		6,241,619,029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사조의 경우, 2021년도 부채비율이 425%93)인 점, 당기순이익와)이 적자인 점,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잉여금95) 대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IV. 4. 가. (1)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경하며, 모란의 경우 위 4. 나. 2)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73.6%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IV. 4. 가. (2)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70을 감경한다.

158 사조와 모란을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에게는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표 216>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⁹³⁾ 사조의 2021년도 자본총계는 47,877백만 원, 부채총계는 203,385백만 원이다.

⁹⁴⁾ 사조의 2021년도 당기순이익은 (-)29,018백만 원이다.

⁹⁵⁾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18,625,113,440원과 이익잉여금 (-)29,018,808,325원을 합한 (-)10,393,694,885원이다

<표 21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제2~3행위)

(단위: 원)

연번	피심인	2차 조정 산정기준	부과과징금 조정	부과과징금
1	참프레	550,164,961	-	550,000,000
2	다솔	1,910,537,159	-	1,910,000,000
3	정다운	1,036,417,867	-	1,036,000,000
4	사조	814,424,491	30% 감액	570,000,000
5	주원	677,513,198	-	677,000,000
6	삼호	382,972,515	-	382,000,000
7	모란	198,351,628	70% 감액	59,000,000
8	성실	509,961,158	-	509,000,000
9	유성	161,276,052	-	161,000,000
		5,854,000,000		

4) 소결

□ 되심인들의 제1행위와 제2~3행위의 각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217>과 같다.

<班 21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전체)

(단위: 원)

연번	피심인	제1행위	제2~3행위	최종 부과과징금(합계액)
1	참프레	_	550,000,000	550,000,000
2	다솔	_	1,910,000,000	1,910,000,000
3	정다운	1,000,000	1,036,000,000	1,037,000,000
4	사조	_	570,000,000	570,000,000
5	주원	1,000,000	677,000,000	678,000,000
6	삼호	0	382,000,000	382,000,000
7	모란	0	59,000,000	59,000,000
8	성실	0	509,000,000	509,000,000
9	유성	0	161,000,000	161,000,000
		5,856,000,000		

5. 결론

160피심인들의 위 2. 가. 2) 및 3)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 2. 가.4)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2년 8월 24일

의 장 부위원장 윤수현

위 원 김성삼

위 원 최윤정